

재난방송 종합매뉴얼

2020. 1

1 재난방송 등 개요

1. 재난방송 등의 정의

- 재난방송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하며,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정의한다.

< 재난 및 민방위사태의 범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1항) >

- 자연재난(재해) :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민방위사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1) 재난상황 발생 전 평시 편성하는 자연재해예방캠페인이나 수재민돕기 방송은 재난방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민방위사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를 말한다.
 -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 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또는 합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2. 재난방송 등의 목적

- 재난방송 실시의 목적은 재난발생 시 혹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민방위사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예상되는 위협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 국민에게 재난 및 민방위사태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 위협성의 반복 보도를 통해 새로운 재난의 발생을 막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 재난 및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예방법과 재난 시 대피요령 등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방송 의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을 최대화한다.

3. 재난방송 등 관련 법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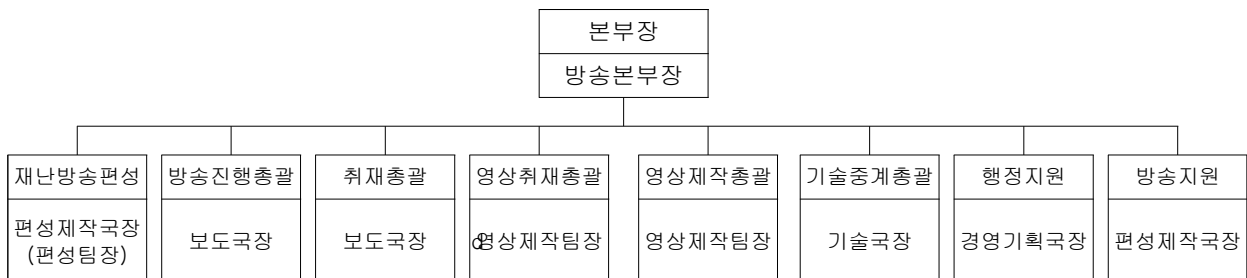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자연재난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
- 방송사업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2)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 주관기관은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기상법 제16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5조)
-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시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한다.(방송법 시행령 제52조)

4. 재난방송조직

- 가. 재난방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방송본부장으로 하며, 각 국·팀장들과 협의해 재난방송을 총괄한다.
- 나. 방송본부장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동원해 재난방송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한다.
- 다. 재난방송 담당자는 편성팀장으로 한다.
- 라. 주요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 : 방송본부장
 - 재난방송편성 : 편성제작국장(편성팀장)
 - 방송진행 및 취재 총괄 : 보도국장
 - 영상취재총괄 : 영상제작팀장
 - 영상 제작(중계차, 스튜디오 카메라) 총괄 : 영상제작팀장
 - 기술·중계총괄 : 기술국장
 - 행정지원 : 경영국장
 - 방송(중계차, 스튜디오 연출)지원 : 편성제작국장

마. 조직도



5. 재난방송의 단계

가. 재난방송 1단계

재해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재해대비 고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재난방송 2단계

기상청으로부터 재해주의보가 발령되거나, 대형 화재 또는 폭발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확인된 제보가 있는 경우

다. 재난방송 3단계

기상청으로부터 재해 경보가 발령되거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발생한 사태로 피해의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라. 재난방송 4단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

마. 재난방송 해제 및 피해복구 방송단계

재난발생 원인이 소멸되고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으나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방송이 필요한 경우

6. 재난방송 단계별 대처방안

가. 재난방송 1단계

- 해당 재난대비 긴급 운행물 제작
 - SPOT 및 크롤을 해당 재난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한다.
 - 필러물 보완 및 제작
- 뉴스 반영
 - 정규 뉴스 중 날씨정보 강화
- 크롤 운행
 - 주요 프로그램에 크롤 운행 개시

- 비상 연락망 가동
 - 재난방송 관련부서 비상 연락체제 가동
- 유관 정부 기관과 수시 연락
 -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와 수시 연락
 -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 예정인 재해방송 요청서를 크롤 및 뉴스의 방송 내용에 적극 반영

나. 재난방송 2단계

- 뉴스 반영
 - 정규 뉴스 중 날씨 정보 강화
 - 정규 뉴스 중 피해예상지역 리포트 기사로 보도
 - SBS 뉴스속보 수중계
- 크롤 운행
 - 크롤 운행 강화(시간당 3회 이상)
- 시설 및 인력 비상 대기
 - 뉴스 제작 인력 및 시설 비상대기
- 정규 프로그램 내 아이템 반영
 - 프로그램에 재해 관련 아이템 적극 반영
- 24시간 방송체제 전환 검토
 - 재난 규모 및 확산 정도에 따라 종일방송체제 검토
- 유관 정부 기관과 수시연락
 -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내용 적극 반영

다. 재난방송 3단계

- 뉴스 반영
 - 정규 뉴스 중 날씨 정보 강화
 - 뉴스 속보 : SBS 수중계 및 자체 속보 편성
- 크롤 운행
 - 프로그램 내 속보 하단띠 운행 개시
- 정규방송 일부 중단 및 특보 편성
 - 재난시국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 운행 중단
 - 특보 : SBS 수중계 및 자체 특보 편성

- 정규 프로그램 내 아이템 반영
 - 반영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재난 관련 아이템 반영 의무화
- 24시간 방송체제로 전환
 - 재난관련 정보를 24시간 접할 수 있도록 종일방송체제로 전환
- 시설 비상 대기
 - 중계차 및 인력 비상대기
 - 비상방송대비 뉴스 스튜디오, 부조 인력 비상 대기
- 편성 비상 근무조 대기
 - 편성 PD 및 MD, MTD 비상 대기
- 유관 정부 기관과 24시간 연락체제 유지
 -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내용 적극 반영

라. 재난방송 4단계

- 정규 방송 중단 및 뉴스 특보체제 전환
- 24시간 방송체제
- 크롤 운행
 - 모든 프로그램 내에 속보 하단띠 운행
- 시설 비상 대기
 - 중계차 및 중계차 관련 인력 비상대기
 - 비상방송대비 뉴스 스튜디오, 부조 인력 비상 대기
- 편성 비상 근무조 대기
 - 편성 PD 및 MD, MTD 24시간 근무체제
- 유관 정부 기관과 24시간 연락체제 유지
 -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내용 적극 반영

마. 재난방송 해제 및 피해복구 방송단계

- 재난상황 해제 고지
 - 뉴스 및 크롤 : 재난 상황 해제 고지, 향후 주의사항 고지
- 복구방송
 - 재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생방송 및 특집 편성

바. 재난 예방 방송

사전에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다음과 같은 재난 예방방송을 전개한다.

○ 연중 예방 캠페인 방송

- 재난 종류에 따른 단계별 대처 요령 등 필러물을 제작해 연중수시로 방송

○ 재난 특집물 제작 방송

-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발생한 재난 피해와 대책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제작 편성

2 재난방송 등 운용 계획

1. 재난방송 등의 실시 체계

○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각 지역 방송사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 정확하게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실제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요청된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통위·과기정통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체계도 >



-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재난발생 시 행정안전부, 기상청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에게 실시간으로 요청문이 자동 전송되어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
-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지진, 지진해일, 호우경보, 대설경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자막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민방위경보시스템 체계도 >



2. 재난방송 등의 실시

-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등이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의 선포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 ③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 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

- ①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 ② 해당 재난 등의 명칭
- ③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 ④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 ⑤ 해당 재난 등의 정보발령기관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4항)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5항)

- ①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 ②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③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정보음을 송출할 것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 방송 등을 실시할 것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 재난방송을 실시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보도기능이 없는 방송사는 제외)과 외국인을 영어자막*방송을 가능한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행동요령 영어자막 방송예시문을 활용하거나 자체 방송문안을 제작하여 방송

<국민행동요령 영어자막 방송예시문>

구분	국민행동요령(영문)
태풍/호우 (Typhoon/ storm)	- Avoid dangerous places such as flood-prone areas and landslide hazard areas; evacuate to a safe place. - Close doors and windows and check weather conditions through TV, radio, and the Internet instead of going out. - Do not go near inundation hazard areas such as brooks, streams, and shores, where you may get swept away by the rapids. - Hikers in mountains and valleys must evacuate to a safe place rather than go near valleys or slopes. - Do not go near construction sites due to falling construction materials. In rural areas, do not go out to check rice paddy levees or inlets for irrigation.
폭염 (heat wave)	- Check weather conditions as often as possible on TV, the Internet, radio, etc. - Drink plenty of water rather than drinks that contain alcohol or caffeine. - Do not do outdoor activities or work between 2:00 p.m. and 5:00 p.m., the hottest time of the day. - Keep temperature difference in indoor and outdoor air around 5 °C when using an air-conditioner to prevent airconditioningitis. - Use cool places such as a cooling center if having mild symptoms such as dizziness, nausea, and a headache. - Ventilate or sprinkle water on stables, greenhouses, etc. to lower the temperature.
폭설 (heavy snow)	- For people in mountainous or isolated areas, prepare emergency supplies such as food and fuel. - Remove snow in front of your house as often as possible. - Prepare winter car emergency kits such as snow chains, calcium chloride, shovels, etc. - Use public transportation rather than private cars. - Drive a car at a low speed and keep a safety distance. - Call 119 when your car is isolated; check weather conditions on TV, radio, and the Internet in the car while waiting for rescue.
한파 (cold wave)	- Pay attention to heating and temperature control for the elderly and infants. - Bundle yourself up not to have frostbite when going out. - Having frostbite, soak the affected area in warm water for about 30 minutes rather than rub it; immediately go to hospital while maintaining the temperature. - To prevent freezing, wrap old clothes around water meters and boiler piping. - Going out for a long time, prevent the freezing and bursting of water pipes by turning on hot water weakly.

	- Prepare winter car emergency kits such as snow chains in response to frozen roads and check the state of the such as an antifreeze.
지진 (earthquake)	- Go under the table to protect your body, and hold its leg firmly. - Shut off electricity and gas and open the door to secure an exit. - Move quickly using the stairs.(Never use the elevator.) - Outside the building, protect your head with your bag or hands, and evacuate while looking around and keeping a safe distance from the building. - Beware of falling objects and quickly evacuate to a large space such as playgrounds, parks, etc.(Never use a vehicle.) - Act according to right information from radio or public announcement.
황사/ 초미세먼지 (yellow dust / ultrafine dust)	- Check windows to prevent yellow dust/fine dust from entering indoors, and prepare a mask. - For the elderly and respiratory patients, reduce outdoor activities and wear a mask when going out - For children, reduce outdoor activities and go home as soon as possible. - After returning home, wash your hands and feet thoroughly. - After yellow dust/fine dust sweeping, ventilate sufficiently and clean your house. - Sufficiently wash food or objects exposed to yellow dust/fine dust before eating or using them. - Check the network of emergency contacts with pupils/students and teach them how to prepare for fine dust/yellow dust.
산불 (forrest fire)	- if the forest fire is getting bigger, promptly get away from the fire and keep going to windward to a safe place - When you cannot afford to evacuate, lie low in a place without fallen leaves or branches, with your face covered, until the flames pass.

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편성 및 방송시간 연장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방송시간은 편성비율의 계산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

4. 재난방송시 준수사항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한다.

5. 재난방송 실시 결과 보고기준 및 평가

- 각 방송사는 재난방송 실시 후에 그 결과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24시간 이내에 입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결과를 근거로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황 종료 후 재난방송 제2단계부터 4단계까지 재난방송 실시 결과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 결과는 방송평가 및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방송매뉴얼 개선작업에 참고 한다.

6. 재난현장 취재시 유의사항

- 집중호우·홍수·태풍
 - 지형이 높은 곳, 우회도로 및 퇴로 등 안전을 확보하고 취재를 하여야 한다.
 - 차도와 인도가 물에 잠길 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유의하고 물에 잠긴 가로등 부근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않는다.
 - 장시간 비를 맞으며 취재할 경우 여름이라도 체온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우의나 방수복 등을 갖추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 수건 등을 준비한다.
 - 해안가에서의 갑자기 덮치는 높은 파도에 대비하고 구명조끼, 구명튜브, 방수 손전등 등을 준비한다.
- 폭설
 - 체온 유지를 위해 방수복, 방한복, 방한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한다.
 - 등산화, 아이젠 등의 장비를 갖추고 고립 지역은 통신이 두절된 경우가 많으므로 무전기 등 비상 통신 수단을 확보한다.
 - 폭설이 장기화될 때 중계차 또는 취재진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고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
 - 지진 피해 지역 취재 시에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헬멧을 착용하고 피해를 입은 건물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진입하지 않는다.
 - 여진에 대비해 취재 차량, 중계차 등은 사방이 트여 있는 공터나 운동장 등에 세워야 하고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높은 지역이나 콘크리트 건물 옥상 등에서 취재한다.

○ 붕괴, 폭발 등 대형사고

- 대형사고 현장에 안전을 위해 관계 당국이 설정한 위험지역은 안전이 확인 되기 전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 붕괴, 폭발 현장 주변은 위험한 지역이므로 안전화, 안전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원전폭발 등 원전사고

- 방사성 물질 누출 지역은 관계당국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취재 여부를 결정하고, 대피령이 내려지면 즉시 그 지역에서 대피한다.
- 방사능 지역 등의 취재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취재를 하여야 한다.

3 재난유형 및 단계별 재난방송 실시 기준

1. 재난방송 등의 단계

- 재난방송의 실시는 자연재해의 경우 그 재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한다.
- 지진*을 제외한 재해 내용이 급박하지 않은 1단계의 재난방송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지진의 경우 방송권역과 상관없이 재난방송을 실시

- 원칙적으로는 풍수해 2단계, 지진 2단계, 지진해일 규모 6.0 이상의 해저 지진 발생 시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나, 예외적으로 재난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의 진행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에는 1단계에서도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송 단계	기상 상황	기타
제 1단계	기상 예비특보 및 기상주의보 발표	방송사 자율 실시 (지진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
제 2단계	홍수, 태풍, 지진해일주의보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요청
제 3단계	기상경보, 지진해일경보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요청
제 4단계	4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기상특보 발표, 그 중 3개 이상 방송권역에 기상경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홍수·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요청
	기상상황이 호전되어 기상·홍수·태풍경보 해제 및 주의보 발표 시 : 2차 재난 경계단계	
재난방송 종료	기상특보 해제	방송사 자율 실시

* 재난방송은 기상청,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요청문에 따라 시행한다.

2. 기상특보 및 지진정보 기준

○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명칭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 이상 또는 순간 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 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 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 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 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한반도의 주변해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의 주변해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 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 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 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 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의 영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시행) ※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참고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미세먼지(PM10) 농도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화 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 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화산재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기상청 지진 통보 발표기준

구 분	신속 정보(자동분석)				상세 정보(수동분석)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발표 기준규모	국내 지진	5.0 이상	국내 지진	(내륙) 3.5 이상 ~ 5.0 미만	국내 지진	2.0 이상
	국외 지진*	5.0 이상		(해역) 4.0 이상 ~ 5.0 미만		
내 용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생산방법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분석시스템	

* 국외지진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한다.

지진해일	주의보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경보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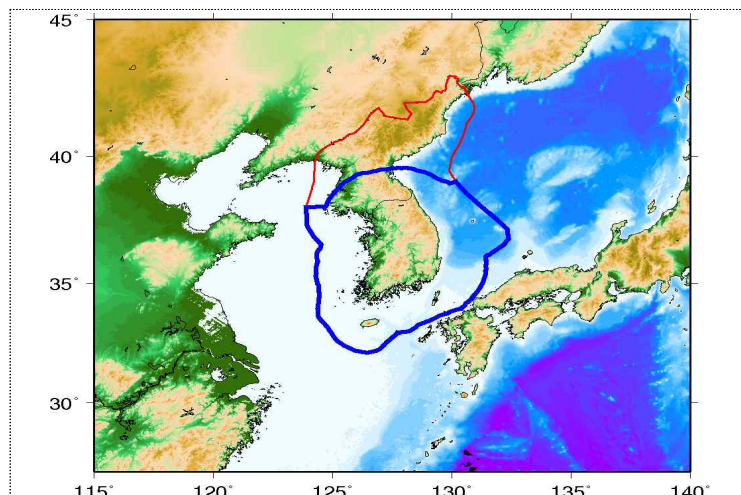
- “남한지역” 내륙은 3.0 이상부터(해역:3.5 이상) 지진 통보를 발령하고, 북한 등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규모 5.0 이상(내륙·해역 동일)인 경우 “지진 조기경보” 발령

※ 평양이북지역(빨간색 영역) 발생 지진은 “지진정보” 발령

○ 지진통보에 대한 단계별 방송구분

구 분		지진/지진해일
1단계	홈페이지 표출	내륙 M 3.0 이상 ~ 4.0 미만 해역 M 3.5 이상 ~ 4.5 미만
2단계	1단계 + 공중파 자막방송 요청 + TU 미디어 + 포탈사이트 + 방송국 경광등 + 긴급 방송	내륙 M 4.0 이상, 해역 M 4.5 이상 지진조기경보 지진해일 특보(주의보 및 경보) 화산재 특보(주의보 및 경보)

<“지진조기경보” 발령 대상지역(파란색 영역)>



“조기경보영역”(파란색 영역) 중 남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남한 내륙을 제외한 북한(평양이남) 및 일본 연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조기경보영역”이 아닌 북한 이북지역(빨간색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보

3. 민방위 경보방송의 기준

-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방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명칭	기 준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화생방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4. 사회재난 재난방송의 기준

- 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실시기준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의 요청(행안부)이 있을 경우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난방송을 실시한다.

재난유형	요청시기*	판단기준
산불	경계~	○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수본 준비단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mu\text{g}/\text{m}^3$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③ 내일 $75\mu\text{g}/\text{m}^3$ 초과 예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경계~	○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 ○ 위기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경계~	<사고의 전개속도 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수질오염사고로 일부지역의 취수가 중단되거나, 대규모 취수 중단이 우려될 때 ○ 국가하천에서 어류폐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하였을 때
대규모 해양오염	경계~	○ 유출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이 어장, 양식장 및 연안지역까지 확산 우려(재난가능성 농후)
댐 붕괴	주의~	○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댐 관측 유입량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 댐 제체 손상이 발생하여 누수량 급증 관측
지하철 대형사고	경계~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전동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사고 또는 침수되어 4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2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고속철도 대형사고	경계~	○ 고속열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대형사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고속열차가 운행 중 충돌·탈선·화재·폭발 사고로 4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2시간 이상의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심각	-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피해 확산 - 건물내부에 다수사상자 발생 및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해양선박사고	경계~	-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기상특보 발효 등 해상·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박의 조난상황을 접수·확인하는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주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작업 중 대형사고가 발생할 징후가 비교적 활발하여 대규모 인적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경계~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징후가 나타나거나, 일부시설이 붕괴되어 전면 붕괴로 확대 우려 - 건물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 다수 발생 - 다수 인명피해 우려 상황 전개 시 → 1개 소방서로 대응 불가하여 광역 응원출동 요청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원자력 안전사고	심각(창색 적색)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해양유도선 수난사고	경계~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해양 유·도선 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이 종료되지 않고 인력·장비 등의 투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12~3월)에는 미세먼지 재난정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될 경우 자막방송 및 스팟(국민행동요령)을 통해 미세먼지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방송

형식	주요내용
자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될때까지 AIRkorea정보를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 및 국민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안내사항 등을 제공(매시간 상당시간 지속)
스팟	각방송사에서 보유하거나 추후 KBS를 통해 제공될 국민행동요령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천사항을 방송

- 미세먼지 정보제공은 방송사 로고 하단(우측상단) 또는 스크롤방송을 통해 방송하며, 아래 색상을 참고하여 실시

<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방안 : 방송사 로고 하단(우측상단)>

(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지역	좋음(농도)	지역	보통(농도)	지역	나쁨(농도)	지역	매우나쁨(농도)
(색상 RGB 코드) 0000FF		(색상 RGB 코드) 00FF00		(색상 RGB 코드) FFFF00		(색상 RGB 코드) FF0000	

- ② 환경부에서 발표(전국 19개 권역 대상)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활용하여 나쁨 등급이상이 예상될 경우, 뉴스, 기상정보 등에서 계층별(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강화

구 분	등 급($\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 ₁₀)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 _{2.5})	0~15	16~35	36~75	76 이상

5.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 기준('19.12.6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기준, '19.12.17 시행)

명 칭		개정				비고									
		자율	의무	통보기관	재난방송 요청기관										
태 풍	주의보		○	기상청	행안부										
	경 보		○												
호 우	주의보	○													
	경 보		○												
홍 수	주의보		○	홍수통제소											
	경 보		○												
대 설	주의보	○		기상청	기상청										
	경 보		○												
폭풍해일	주의보	○													
	경 보		○												
지진해일	주의보		○												
	경 보		○												
지 진	조기경보		○			*규모 (내륙/해역) 5.0 이상 *규모 (내륙) 3.5 이상 ~ 5.0 미만 (해역) 4.0 이상 ~ 5.0 미만									
	속 보		○												
	정 보		○			<table><tr><td>구분(규모)</td><td>남한</td><td>북한</td></tr><tr><td>내륙</td><td>3.0 이상</td><td>5.0 이상</td></tr><tr><td>해역</td><td>3.5 이상</td><td>5.0 이상</td></tr></table>	구분(규모)	남한	북한	내륙	3.0 이상	5.0 이상	해역	3.5 이상	5.0 이상
	구분(규모)	남한	북한												
내륙	3.0 이상	5.0 이상													
해역	3.5 이상	5.0 이상													
정보(재통보)	○														
화산재	주의보	○													
	경보	○													
한 파	주의보	○			행안부										
	경 보		○												
강 풍	주의보	○													
	경 보		○												
풍 랑	주의보	○													
	경 보		○												
건 조	주의보	○													
	경 보		○												
폭염	주의보	○													
	경 보		○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관심, 주의	○		과기정통부											
	경계, 심각		○												
통신재난	관심, 주의	○													
	경계, 심각		○												
원자력안전사고	심각 (청색,적색)		○	원안위											
산 불	경계~		○	산림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경계~		○	환경부											
대규모 수질오염	경계~		○	해수부 (환경부/산업부)											
대규모 해양오염	경계~		○												
댐붕괴	주의~		○												
지하철 대형사고	경계~		○	국토부											
고속철도 대형사고	경계~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심각		○	소방청											
해양선박사고	경계~		○	해수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주의~		○	고용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경계~		○	국토부											
해양유도선 수난사고	경계~		○	해양경찰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		○	환경부											
	기타 재난		○*	해당부처											
	민방위경보		○	공군											

* 기타 재난(또는 위기발령 이전)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방송 요청 가능

6. 단계별 재난방송 구성형식

< 지상파TV·종편·보도PP >

① 지진/지진해일시

구분	형식	1단계 (지진규모) 내륙 : 3.0~3.9 해역 : 3.5~4.4	2단계 (지진규모) 내륙 : 4.0~4.9 해역 : 4.5~4.9 (지진해일주의보)	3단계 (자진규모) 내륙·해역 : 5.0 이상 (지진해일경보)
자막	개시시간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 10개 주요방송사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 10개 주요방송사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자막내용(진앙, 규모)	-	화면 하단 정지자막	화면 하단 정지자막
	자막 크기	-	가로 전체, 세로 최소 170 픽셀(1/6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216 픽셀(1/5 크기) 이상
	바탕색 및 글자 색상	(자막 시) 흰색 바탕, 검정색 굵은 글씨	파란색 바탕 흰색 굵은 글씨	빨간색 바탕 흰색 굵은 글씨
	위치	화면 하단	화면 하단	화면 하단
	강조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예시	홀림자막 또는 CG(자막)	시간 OO도 OO지역, 규모 4.0 지진 발생 Time OODO OOSI, M4.0, EARTHQUAKE 시간 OO지진해일로 인해 OO지역 지진해일 영향 가능 Tsunami Advisory, Time, Region	시간 OO도 OO지역, 규모5.0 지진발생, Time OODO OOSI, M5.0 EARTHQUAKE 시간 OO지진해일로 인해 OO지역 지진해일 피해 가능 Tsunami Warning, Time, Region
	유지시간(5분)	(자막 시) 한글자막 10 초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자막 최소 10초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자막 최소 10초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홀림자막	기상청 지진정보	자율	자율
	지진정보방송 실시	지진발생, 피해, 대피요령 등	지진발생, 피해, 대피요령 등	지진발생, 피해, 대피요령 등
경보	경보음, 음성안내	자율	자율	경보음 + 음성안내
특보	특보방송	자율	자율 ※ 단, KBS는 30분 이내, 10분 이상 유지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방송 실시 ※ 단, KBS는 10분 이내 30분 이상 유지

※ 규모 2.0~2.9이하는 정규뉴스 중 지진정보 방송실시(자율)

※ 한글과 영문 자막 혼용, 자막강조, 자막위치는 스크롤과 겹치지 않게 자율적 운영

※ 2단계 발생시 피해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특보방송 실시(KBS 의무)

※ 보도기능이 없는 방송사는 특보 제외

② 민방위 사태

구분	공습경보 (Air raid Alarm)	경계경보 (Warning Alarm)	화생방경보 (CBR Alarm)	경보해제 (Alarm lifted)
자막 크기	가로 전체, 세로 최소 510픽셀(1/2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340픽셀(1/3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340픽셀(1/3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340픽셀(1/3 크기) 이상
바탕색 및 글자 색상	빨간색 바탕 흰색 굵은 글씨	청록색 바탕, 흰색 굵은 글씨	노랑색 바탕 검정색 굵은 글씨	흰색 바탕 검정색 굵은 글씨
위치	화면 하단	화면 하단	화면 하단	화면 하단
강조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국문	00시00분 공습경보 발령 oo지역*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방송 청취	00시00분 경계경보 발령 oo지역*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할 준비하고 방송 청취	00시00분 화생방경보 발령 oo지역* 호흡기 및 피부 등을 보호하여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대피하고, 방송 청취	00~시00분 경보해제 발령 oo지역* 정상업무에 복귀
지역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릉군, <u>백령대청도, 연평도, 흑산도</u>			
영문	00:00 Air raid alarm oo region* Evacuate to the nearest underground shelter and listen to broadcast	00:00 Warning alarm oo region* Prepare to evacuate to the nearest under ground shelter and listen to broadcast	00:00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BR) alarm oo region* Protect your respirato ry system and skin, evacuate to a non- polluted region, and listen to broadcast	00:00 Alarm lifted oo region* Return to normal business operations
지역	* Nationwid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Jeju-do, Ulleung-gun, <u>Baengnyeong-Daechongdo, Yeonpyeongdo, Heuksando</u>			
경보	경보음* + 음성안내	경보음* + 음성안내	경보음* + 음성안내	경보음* + 음성안내
유지시간(5분)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흘림자막(스크롤)	경보해제 시까지 (생방송 특보체제 시 자율)	경보해제 시까지 (생방송 특보체제 시 자율)	경보해제 시까지 (생방송 특보체제 시 자율)	3회 실시
특보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 방송 실시 ※ 단 KCS는 10분 이내 30분 이상 유지 (피해사황, 공습경보 시 행동요령 등)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 방송 실시 ※ 단 KCS는 10분 이내 30분 이상 유지 (경계경보 시 행동요령 등)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 방송 실시 ※ 단 KCS는 10분 이내 30분 이상 유지 (화생방경보시 행동요령 등)	

※ 한글과 영문 자막 혼용, 자막강조, 자막위치는 흘림자막(스크롤)과 겹치지 않게 자율적 운영

* 경보음은 재난경보음 사용

③ 풍수해

구분		자막방송	경보음	뉴스특보 (보도기능 없는 방송사 제외)
풍수해	1단계 (기상예비특보, 주의보)	○ 자율(정기뉴스 날씨정보)	○ 자율	○ 자율
	2단계 (홍수, 태풍주의보)	○ 흘림자막(스크롤) 최소 10초 노출, 5회 이상	○ 자율	○ 자율
	3단계 (일반경보)	○ 흘림자막 최소 10초 노출, 5회 이상 ○ 필요시 정지자막	○ 자율	○ 자율
	4단계 (태풍,홍수경보)	○ 흘림자막 최소 10초 노출, 5회 이상 ○ 필요시 정지자막	○ 자율	○ 자율 (4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기상특보 발표, 그 중 2개 이상 권역에 기상경보발표 및 1개권역 이상 태풍, 홍수경보가 발표될 때)

< 라디오 >

구분		음성안내	뉴스보도 또는 특보 (보도기능 없는 방송사 제외)
지진	1단계 (지진규모) 내륙 : 3.0~3.9 해역 : 3.5~4.4	○ 음성안내(육성,TTS)	○ 자율
	2단계 (지진규모) 내륙 : 4.0~4.9 해역 : 4.5~4.9 (지진해일주의보)	○ 음성안내(육성,TTS)	○ 자율
	3단계 (지진규모) 내륙·해역 : 5.0 이상 (지진해일경보)	○ 음성안내(육성,TTS)	○ 자율 ※ 단, KBS 라디오는 10분 이내, 30분 이상 유지
풍수해	1단계 (기상예비특보, 주의보)	○ 자율	○ 자율(정기뉴스 날씨정보)
	2단계 (홍수, 태풍주의보)	○ 음성안내(육성,TTS)	○ 자율
	3단계 (일반경보)	○ 음성안내(육성,TTS)	○ 자율
	4단계 (태풍,홍수경보)	○ 음성안내(육성,TTS)	○ 자율 (4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기상특보 발표, 그 중 2개 이상 권역에 기상경보발표 및 1개 권역 이상 태풍, 홍수경보가 발표될 때)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해제*		○ 경보음 + 음성안내	○ 자율 ※ 단, KBS 라디오는 30분 이내, 10분 이상 유지

* 경계, 공습, 화생방, 경보해제시 음성안내(경보음+음성안내)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서 정한 중앙방송사 8개와 경기FM만 실시

재난대책 유관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비서실(국정상황실) 자치발전비서관실	02-770-4384,5 02-770-4283, 4287 02-770-7432	02-770-4887 0505-173-8720 0505-173-8734
국가정보원	상황실	02-3414-9437	02-2187-0311
국무총리실	수행비서관(직보사항) 안전환경정책관 재난지원과(자연재난) 안전지원과(사회재난)	044-200-2102 044-200-2339 044-200-2343 044-200-2348	044-200-2000 044-200-2367 044-200-2367 044-200-2367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상황담당관실 재난대응정책과 지진방재과	044-205-1540, 044-205-1541 (사회), 1542(자연) 044-205-5210 044-205-5180	044-205-8894, 8890 044-205-8954 044-205-8927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044-205-1119, 2119, 3119, 4119	044-205-8877
해양경찰청	경비국 - 상황센터	032-835-2142, 2242, 2342, 2442	032-858-8182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국내재난안전) 기후녹색협력과 재외국민안전과 재외국민보호과 정세분석담당관(종합상황실)	02-2100-8546 02-2100-7749 02-2100-8204 02-2100-7583 02-2100-8108	02-2100-7928 02-2100-7991 02-2100-7995 02-2100-7974 02-2100-7998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15-2680~2, 2684~5	044-215-803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 지상파방송정책과 당직실(야)	02-2110-1314 02-2110-1429(재난방송) 02-2110-1590	02-2110-0135 02-2110-0136 02-2110-0125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재난관리지원과 재난대책상황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소 육군재난대책상황실(육군지휘통제실) 해군재난대책상황실(해군지휘통제실) 공군재난대책상황실(공군지휘통제실) 교육정책과(사격장관리)	02-748-5701 02-748-5760~9, 5689 02-748-3181~3 02-748-0301~4, 0300 042-550-4134~5 042-553-4121~3 042-552-4215~7 02-748-6247	02-748-5778 02-748-5795 02-796-0369 042-551-0666 042-551-0449 042-551-3399 02-748-6224
통일부	비상안전담당관 야) 당직실	02-2100-5712~3 02-2100-5799	02-2100-5719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야) 당직실	044-203-2290~4 044-203-2180	044-203-3458 044-203-3452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총괄) 재해보험정책과 농업기반과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야) 당직실 농림축산검역본부(AI·구제역)	044-201-1474 044-201-1794~5 044-201-1860~1 044-201-2522~3 044-201-2532~4 044-201-2555~7 044-201-1000 054-912-0366~7	044-868-7909 044-868-0186 044-868-0415 044-868-0628 044-868-0469 044-863-9210 044-868-0140 054-912-0383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종합상황실 문산에너지과(정전)	044-203-5581 044-203-4002~5 044-203-5199	044-203-4789 044-203-4790 044-203-47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통신재난) 전파기반과(GPS혼신, 우주전파) 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물체 추락) 야)당직실	044-202-4384 044-202-6672 044-202-4957 044-202-4625 044-202-4180~1	044-202-6015 044-202-6041 044-202-6045 044-202-6023 044-202-6053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비상안전담당관 야)당직실	044-203-6893, 6355 044-203-6298, 6309 044-203-6192 044-203-6118~9	044-203-6971 044-203-6305 044-203-6193 044-203-6133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재난안전팀) 야)당직실 응급의료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	044-202-2652, 2651 044-202-2117~8 044-202-2560, 2551 02-6362-3455~6 043-719-7789~90, 9054 043-719-9121, 9131	044-202-3989 044-202-3985 044-202-3930 02-6362-3457 043-719-7219 043-719-9149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화학안전과 수질관리과 물이용기획과 수자원정책과 대기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과 토양지하수과 자연공원과 야) 당직실	044-201-6493~4 044-201-6838~9 044-201-7069, 7062 044-201-7114, 7115 044-201-7612, 7617 044-201-6875, 6872 044-201-7287, 7250 044-201-7180, 7183 044-201-7313, 7325 044-201-7440~1	044-201-6496 044-201-6830 044-201-7070 044-201-7130 044-201-7610 044-201-6873 044-201-7261 044-201-7189 044-201-7310 044-201-7442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실 야) 당직실	042-481-6870(주) 042-481-4351(야)	042-472-3292 -
한국환경공단	안전관리실	032-590-3232	032-590-3237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재난관리부) 재난안전상황실	033-769-9600 033-769-9600~2	033-769-9608
	가야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경주국립공원(탐방시설과) 계룡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내장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탐방시설과) 덕유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무등산국립공원(재난안전과) 변산반도국립공원(탐방시설과) 북한산국립공원(재난안전과) 설악산국립공원(재난안전과) 소백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속리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오대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월악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월출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주왕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지리산국립공원(재난안전과) 치악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태안해안국립공원(탐방시설과) 태백산국립공원(탐방시설과) 한려해상국립공원(탐방시설과)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	055-930-8023 054-778-4100 042-825-6137 063-538-7876 061-550-0924 063-320-3830 062-230-2022 063-580-7830 02-909-0498 033-636-7794 054-638-6196 043-542-5269 033-332-6418 043-653-3250 061-473-5211 054-870-5324 055-970-1051 033-732-4634 041-672-9738 033-550-0030 055-860-5800 064-710-7817	055-931-0070 054-778-4104 042-825-5755 063-538-7871 061-550-0903 063-322-4445 062-230-2099 063-583-8186 02-909-0888 033-636-8344 054-638-8231 043-543-3992 033-333-5461 043-653-3255 061-471-1701 054-870-5340 055-970-1049 033-731-8406 041-672-4108 033-552-7836 055-860-5858 064-710-7819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689 044-202-7729 044-202-7746 044-202-7755	044-202-8090 044-202-8092 044-202-8093 044-202-809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당직실	052-703-0110~0113 052-703-0539	052-703-0130 052-703-033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안전전담) 하천계획과(수해) 첨단도로환경과(수해) 도로운영과(설해) 항공정보통신센터(인천) 항공정보실(김포) 야) 당직실	044-201-4617 044-201-3609 044-201-3925 044-201-3911, 3918 032-740-2261 02-2660-2145 044-201-4672	044-201-5671 044-201-5556 044-201-5592 044-201-5591 032-740-2269 02-2662-5083 044-201-5700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일반선박·풍수해· 화산·감염병) 항만기술안전과(항만시설, 지진) 어촌어항과(어항시설) 연안해운과(내항여객선) 해운정책과(외항여객선) 어선정책팀(연근해어선) 원양산업과(원양어선) 해양환경정책과(해양오염) 양식산업과(적조)	044-200-5855~8 044-200-5955, 5956 044-200-5651, 5656 044-200-5737, 5738 044-200-5720, 5727 044-200-5527 044-200-5367, 5368 044-200-5283 044-200-5641	044-200-5869 044-200-5929 044-200-5669 044-200-5739 044-200-5729 044-200-6139 044-200-5379 044-200-5299 044-870-1728
경찰청	치안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계 교통안전계 고속도로본부순찰대	02-3150-1234, 2229 02-3150-1641 02-3150-2252 02-3150-2154, 2254	02-3150-3657~8 02-3150-2661 02-3150-2850 02-3150-3854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국가태풍센터(센터장HP) 예보국장 예보정책과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인천)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02-2181-0672~5 02-2181-0078~9 070-7850-6351(010-9024-0365) 02-2181-0491 02-2181-0493, 0502 02-2181-0762~8 02-2181-0078~9 070-7850-1613, 1465 051-718-0331 062-720-0355 042-863-0367, 042-862-0360 033-650-0331 064-724-4585 032-740-2800 053-956-0365 063-287-6196 043-272-0365	02-836-6755 02-831-8746 064-805-0366 02-847-4419 02-847-4419 02-841-7664 02-831-8746 031-292-9764 051-558-9503 062-531-4204 042-863-0369 033-643-0367 064-753-1401 032-740-2817 053-952-0368 063-284-0365 043-262-0365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당직실	042-481-4822 042-481-4651	042-481-4932 042-481-4768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방재상황실 당직실 원자력안전과 월성현장방재센터 영광현장방재센터 울진현장방재센터 고리현장방재센터 대전현장방재센터	02-397-7352, 57, 59, 51(과장) 02-397-7293, 7294 02-397-7300 02-397-7288 054-740-3605 061-350-3605 054-780-3605 051-720-3605 042-612-3605	02-397-7362 02-397-7296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산사태방지과 산불방지과	042-481-4230 042-481-8844 042-481-4255	042-471-1445 042-472-3223 042-481-4260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비상안전) 재해대응과(풍수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	063-238-0320~0322 063-238-1041~1044 063-238-7222	063-238-1799 063-238-1780 063-238-723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총괄) 하천공사과(풍수해) 수원국토 하천관리과(풍수해) 의정부국토 구조물과(풍수해) 도로계획과(설해) 수원국토 보수과(설해) 의정부국토 보수과(설해) 야) 당직실	02-2110-6895 02-2110-6858 031-218-1794 031-820-1765 02-2110-6807 031-218-1750 031-820-1733 02-2110-6791~2	02-2110-0685 02-2110-0693 031-218-1788 031-842-0597 02-2110-0690 031-284-2210 031-847-7680 02-2110-068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도로공사과 홍천국토 구조물과(수해) 홍천국토 보수과(설해) 강릉국토 구조물과(수해) 강릉국토 보수과(설해) 정선국토 구조물과(수해) 정선국토 보수과(설해) 야) 당직실	033-769-5694 033-769-5842 033-430-9154 033-430-9142 033-650-8816 033-650-8830 033-560-0742 033-560-0728 033-769-5663~4	033-744-8473 033-746-6785 033-433-2071 033-435-5982 033-650-8819 033-650-8833 033-560-0755 033-560-0733 033-745-13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수해) 도로계획과(설해) 도로공사과(지진 등) 논산국토 구조물과(수해) 논산국토 보수과(설해) 충주국토 구조물과(수해) 충주국토 보수과(설해) 보은국토 구조물과(수해) 보은국토 보수과(설해) 예산국토 구조물과(수해) 예산국토 보수과(설해) 야) 당직실	042)670-3318 042)670-3524 042)670-3563 041)730-5863 041)730-5835 043)850-2565 043)850-2533 043)540-2362 043)540-2332 041)330-6654 041)330-6615 042)670-3260~1	042)670-3487 042)670-3484 042)670-3485 041)730-5993 041)730-5992 043)850-2579 043)850-2558 043)540-2402 043)540-2401 041)330-6660 041)330-6620 042)670-348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수해) 도로공사과(수해) 도로계획과(설해) 광주국토 구조물과(수해) 광주국토 보수과(설해) 전주국토 구조물과(수해) 전주국토 보수과(설해) 남원국토 구조물과(수해) 남원국토 보수과(설해) 순천국토 구조물과(수해) 순천국토 보수과(설해) 야) 당직실	063)850-9333 063)850-9252 063)850-9228 062)970-6355 062)970-6332 063)220-0465 063)220-0443 063)620-2951 063)620-2934 061)740-1057 061)740-1034 063)850-9194	063)850-9486 063)850-9457 063)850-9456 062)970-6359 062)970-6339 063)220-0457 063)220-0456 063)620-2963 063)620-2962 061)743-3711 061)744-5761 063)850-9461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수해) 도로공사1과(설해) 재해대책상황실 대구국토 하천관리과(수해) 대구국토 보수과(설해) 진주국토 구조물과(수해) 진주국토 보수과(설해) 포항국토 구조물과(수해) 포항국토 보수과(설해) 영주국토 구조물과(수해) 영주국토 보수과(설해) 진영국토 하천관리과(수해) 진영국토 보수과(설해) 야) 당직실	051)660-1226 051)660-1136 051)660-1008~9 053)605-6078 053)605-6034 055)740-2662~7 055)740-2642 054)260-2566 054)260-2538 054)630-0073 054)630-0058 055)340-6673 055)340-6640 051)660-1005~6	051)660-1222 051)660-1161 051)660-1269 053)605-6090 053)605-6092 055)740-2679 055)740-2659 054)260-2571 054)260-2549 054)630-0099 054)630-0069 055)340-6679 055)343-5128 051)660-1276
제주도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064)710-8590	064)710-8589
한강홍수통제소	소장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수자원정보센터 홍수상황실 야) 당직실	02)590-9900 02)590-9915 02)590-6105 02)590-9953 02)590-9983 02)590-9990~8 02)590-9920~1	02)590-9905 02)590-9919 02)590-9949 02)590-9959 02)590-9989 02)590-9929 02)590-9929
낙동강홍수통제소	소장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상황실 야) 당직실,	051)603-3300 051)603-3310 051)603-3320 051)603-3330 051)603-3350~9 051)603-3360~1,	051)603-3304 051)603-3305 051)201-3494 051)603-3334 051)201-3494 051)201-3494
금강홍수통제소	소장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상황실 야) 당직실	041)851-0501 041)851-0510 041)851-0520 041)851-0530 041)851-0590~3 041)851-0560	041)851-0519 041)853-1078 041)851-0549 041)853-1078 041)852-1079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장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야) 당직실 상황실	062)600-8300 062)600-8310 062)600-8320 062)600-8330 062)600-8360, 062)600-8351~5	- 062)600-8319 062)600-8329 062)600-8339 062)600-8369, 062)600-835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항만정비과 항로표지과 팔미도 등대 부도 등대 선미도 등대 소청도 등대	032-880-6312 032-880-6254 032-831-4925 032-833-3926 032-831-4927 032-836-3104	032-880-6375 032-881-2390 -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41-660-7697	041-669-374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항로표지과 어청도 등대 말도 등대	063-441-2311, 2313, 2314 063-466-4411 063-465-2089	063-441-2357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항로표지과 목포구 등대 홍도 등대 가거도 등대 가사도 등대 하조도 등대 당사도 등대	061-280-1721, 1725 061-536-0434 061-246-3888 061-246-5553 061-542-5600 061-542-5374 061-553-8086	061-280-1733 - - - - - -
한국전력공사	안전보안처(재난관리부) 배전운영처(배전계통부) 당직실 재난종합상황실	(주간)061-345-4391~6 (주간)061-345-4824 (휴일,야간)061-345-3203,4203,5203 (비상시) 061-345-8601~26	061-345-4399 061-345-4899 061-345-4193 061-345-8648~9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한국수력원자력(주)	위기관리실 야)당직상황실 종합상황실 수력처 팔당수력발전소 한강수력본부	054-704-3312 054-704-2203 054-704-1111~3 054-704-2533 031-579-0242, 47 033-245-2340	054-704-3396 054-704-5695 054-704-1197 054-750-2596 031-579-0244 033-245-2349
한국남동발전(주)	재난관리부 상황실	070-8898-1911 055-795-3080	055-761-3621 055-795-3081
한국중부발전(주)	재난관리부 상황실	070-7511-1812 070-7511-1203	070-7511-1055 070-7511-1040
한국서부발전(주)	재난안전부 상황실	041-400-1771~2 041-400-1472	041-400-1488 041-400-1999
한국남부발전(주)	재난관리부 상황실	070-7713-8731 070-7713-8063/8064	051-639-9035 070-7713-8639
한국동서발전(주)	재난안전총괄부 상황실	070-5000-1553 070-5000-1099	070-5000-1496 070-5000-1496
한국전력거래소	보안정보전략실(주간) 상황근무 및 당직(야간) 중앙전력관제센터(주·야간)	061)330-8380.2~4 061)330-6323(010-9128-6500) 061)330-8840~6	061)330-8397 061)330-8760 061)330-8729
	경인전력관제센터(주·야간)	031-467-7930~3	031-467-7939
	제주전력관제센터(주·야간)	064-741-1240~1	064-741-1249
한국수자원공사	재난안전실 통합물관리처 물관리종합상황실 유역관리처 한강물관리처 금·영·섬물관리처 낙동강물관리처 소양강지사 충주권지사 횡성원주권지사 화천권지사 안동권지사(안동댐) 안동권지사(임하댐) 청송권지사(성덕댐) 합천지사 남강지사 군위지사 김천부항지사 영천권지사(보현산댐) 밀양권지사 대청지사 웅담지사 주암지사 섬진강지사 부안권지사 보령권지사 전남서남권지사(장흥댐) 연천포천권지사(한탄강댐) 연천포천권지사(군남댐) 한강보관리단 금강보관리단 영산강보관리단 부산권지사 낙동강보관리단	042)629-2950 042)629-3501 042)629-2037 042)629-3550 02)2150-0305 063)281-1310 053)668-1280 033)259-7203, (당)7270 043)840-1204, (당)855-1240 033)340-0204, (당)0240 031)480-1510, (당)1520 054)850-4203, (당)4240 054)820-2211, (당)2240 054)870-0300, (당)0300 055)930-5207, (당)5240 055)760-1240, (당)1240 054)380-3502, (당)3502 054)420-2600, (당)2670 054)339-2230, (당)2230 055)359-3202, (당)3240 042)930-7280, (당)7240 063)430-4203, (당)4240 061)749-7210, (당)7240 063)640-6211, (당)6240 063)580-3210, (당)3240 041)939-1240, (당)1240 061)860-3240, (당)3240 031)830-4245, (당)4245 031)830-4380, (당)4353 031)880-6201, (당)6265 041)830-0601, (당)0615 062)600-2105, (당)2180 051)200-2511, (당)2740 053)667-7211, (당)7278	042)629-4805 042)629-3419 042)629-3419 042)629-3555 02)2150-0380 063)281-1319 042)629-4910 033)259-7287 043)840-1236 033)340-0238 031)480-1575 054)850-4236 054)820-2280 054)870-0398 055)930-5232 055)760-1317 054)380-3520 054)420-2650 054)339-2298 055)359-3245 042)930-7231 063)430-4276 061)749-7170 063)640-6230 063)580-3261 041)939-1231 061)860-3231 031)830-4240 031)830-4382 031)880-6259 041)830-0629 062)600-2175 051)200-2520 053)667-7245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한국도로공사 (김천신사옥)	안전총괄팀(터널화재)	054)811-2737~8	054)811-2709
	안전총괄팀(설해)	054)811-2735~6	054)811-2709
	안전총괄팀(풍수해)	054)811-2733	054)811-2709
	구조물개량팀(붕괴)	054)811-2911~2	054)811-2909
	재난종합상황실(비상근무)	054)811-1191~5	054)811-1199
	야) 당직실	054)811-1004~5	054)811-1009
	수도권본부	02)2219-6000	02)2219-6199
	강원본부	033)811-6000	033)811-6199
	충북본부	043)721-6000	043)721-6199
	대전충남본부	042)722-6000	042)722-6199
	전북본부	063)714-6000	063)714-6193
	광주전남본부	061)883-6000	061)883-6195
	대구경북본부	053)714-6000	053)714-6199
	부산경남본부	055)711-6000	055)711-6199
	춘천지사(서울-춘천간 관리)	033)811-6600	033)811-6699
	울산지사(부산-울산간 관리)	052)701-6270	052)701-6299
신공항하이웨이(주)	도로운영팀 교통상황실 교통관리팀	032)560-6071~3 032)560-6100 032)560-6051~3	032)560-6088 032)560-6149 032)560-6058
부산울산고속도로(주)	경영관리실 교통상황실	052)701-6282 052)701-6270	052)701-6292 052)701-6299
천안논산고속도로(주)	교통안전부 교통정보센터	041)850-6811, 6891 041)850-6820~1	041)850-6839 041)850-6829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안전도로팀 상황실	055)350-2650~5, 2690 055)350-2600	055)350-2659 055)350-2689
서울고속도로(주) (일산~퇴계원)	교통안전팀 시설관리팀 상황실	031)894-3157 031)894-3081 031)894-3172~4, 3000	031)894-3130 031)894-3130 031)894-3177
경수고속도로(주) (용인~서울)	운영지원팀 교통정보센터	070)7435-9004 070)7435-9111~2	031)548-2205 031)548-2206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시설관리팀 상황실	033)269-1141 033)811-6600	033)269-1181 033)811-6699
인천대교(주)	안전관리팀 교통센터	032)745-8063 032)745-8000, 8100	032)745-8047 032)745-8109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방재관리부) 재난상황실	033-769-9600 033-769-9600~2	033-769-9609
한국가스공사	재난총괄부 중앙통제소 당직실(야간)	053-670-0407~10 053-670-0501~4 053-670-0500, 6998	053-670-0419 053-670-6899 053-670-6999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부 상황실	063-716-2310~4 063-716-2117, 9	(주)063-716-9644 (야)063-716-9627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당직실	055)771-4920 1599-4114	055)771-4932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팀	3272-0123 → 123(내선)	3272-0122
한국철도공사	선로관리처 토목시설처(자연재해) 재해대책본부(특보시) 종합상황실(관제운영실)	042)615-4486, 4481 042)615-4508, 4502 042)615-4804~8 042)615-4800, 4761~4766	02)361-8306 02)361-8307 02)361-8307 042)472-3079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난관리부 상황실(우기, 동절기) 야)당직실		042)607-3352, 3354, 3358 042)607-4001~2 042)607-3000	042)607-3309 042)607-4009 042)607-4000
공항철도(주)	종합관제실 안전실		032)745-7841 032)745-7185	032)745-7919 032)745-7902
서울교통공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02)6311-9995~8	02)6311-4119
	제1종합관제센터(1~4호선) 제2종합관제센터(5~8호선)		02)6110-5990~1 02)6311-2714~5	02)6110-5911 02)6311-2370
서울도시철도(9호선)	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기술팀(1단계)	02) 2656-0020~1	02) 2656-0045
	운영사	서울9호선운영(주) 안전품질실(1단계)	02) 2656-0550, 0552~4, 0556~8, 0568~9	02) 2656-0567
		서울9호선운영(주) 종합관제센터(1단계)	02) 2656-0500~5	02) 2656-059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안전품질팀(2단계)	02-2656-2721~4	02-2656-2739,2759
우이신설도시철도	시행사	우이신설경전철(주) 안전관리팀	02) 3499-5525	02) 924-9514
	운영사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안전관리실	02) 3499-5537	02) 3499-5547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종합관제실	02) 3499-5560	02) 3499-5568
서울시 (서울지하철총괄)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안전팀 이승행		2133-4348	02-2133-1069
부산교통공사	종합관제실		051-640-7034~5	051-640-7037,7099
대구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소		상황관리실 053-640-2464 053-640-2466~8 (1호선) 053-640-5466~8 (2호선) 053-640-7741~4 (3호선)	053-640-2379 053-640-2469 053-640-5470 053-640-7749
	안전방재부		053-640-2360	053-640-2369
광주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실 안전관리실		062-604-8190~3 062-604-8152	062-604-8199 062-604-8159
대전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실(상황) 안전관리팀		042-539-3288~3289 042-539-3487~3488	042-539-3269 042-539-3489
네오톨랜스 (신분당선,경기철도)	종합관제팀 안전관리팀		031-8018-7618 031-8018-7663	031-8018-7609 031-8018-7513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주)	종합관제팀 안전관리팀		055-310-9811 055-310-9060	055-310-9809 055-310-9063
의정부경전철 (운영 등/인천교통공사)	안전관리팀		031-828-1650	031-828-1603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사무실	FAX
용인경량전철(주)	관제팀 운영안전팀	031-329-3566 031-329-3505	031-334-6400 031-329-3599
가야철도 (시설물관리)	기술관리팀	055-583-0652	055-583-0657
경기철도(주) (SPC법인)	기술관리팀	031-270-5922	031-270-5915
전라선철도(주) (시설물관리)	기술운영본부	063-858-8322	063-858-8323
㈜에스알	재난안전상황실 안전본부 안전환경처 재난안전팀	02-6177-8391/010-2442-8391 02-6484-4616/010-2321-9735	02-6177-8398 02-6484-4093
대한송유관공사	SHE팀(안전,건강,환경) 중앙통제실(주.야간)	031-779-9170 031-779-9333	031-779-9987 031-779-99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 (방사선사고 신고전화)	042-868-0743,0959 080-004-4949	042-868-0356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인사총무부 건설지원팀 비상계획국 비상기획팀	02-2080-5920 02-2080-5794	02-2080-4140 02-2080-58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안전조업 상황실	02-2240-2321 02-2240-2323~4	02-2240-3028 02-2240-3027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재난안전부 (당직실)	061-338-6700 061-338-6711~21 061-338-6803	061-338-6739 061-338-6799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 야) 당직실	02-3705-3611~4 02-3705-3541	02-3705-3639 02-3705-3639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본부(세종) 운항관리실 제주 운항관리센터 부산 운항관리센터 인천 운항관리센터 목포 운항관리센터 여수 운항관리센터 전북 운항관리센터 완도 운항관리센터 통영 운항관리센터 경북 운항관리센터 강원 운항관리센터 보령 운항관리센터	044-330-2370~5 064-759-9780~5 051-469-8425~6 032-889-3945~3954 061-247-9457~9466 061-662-9713~9718 063-471-7486~9 061-555-4023~8 055-649-8430~7 054-256-9784~7 033-534-8437~9 041-931-9083~7	044-330-2379 064-759-9786 051-469-8427 032-889-4061 061-247-9594 061-662-9719 063-471-7590 061-555-4029 055-649-8438 054-256-9788 033-534-8440 041-931-908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 종합상황실	042-868-3952	042-868-3955

재난유형별 기관 연락처

재난유형	주 관 기 관	유 관 기 관
① 풍 수 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0(과장) ☎044-205-5235(사무관) ☎044-205-5237(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5 재해구호협회 구호과 ☎02-3272-012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5~8 환경부 비상안전(담) ☎044-201-6493, 6494
② 지 진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0(과장) ☎044-205-5191(사무관) ☎044-205-5192(주무관)	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052-928-8180 환경부 비상안전(담) ☎044-201-6493, 6494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5956
③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0(과장) ☎044-205-5191(사무관) ☎044-205-5192(주무관)	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052-928-8180 환경부 비상안전(담) ☎044-201-6493, 64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55~8
④ 산 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0(과장) ☎042-481-4257(사무관) ☎042-481-4258(주무관)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상황실 ☎033-769-9600 산림청 상황전화 ☎042-481-4119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3
⑤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1(과장) ☎044-201-6838(수석전문관) ☎044-201-6834(주무관)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 ☎042-605-7030~3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750-1300~4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2(과장) ☎044-202-7759(사무관) ☎044-202-7760(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044-203-40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상황실 ☎052-703-0110~0113

재난유형	주 관 기 관	유 관 기 관
⑥ 대규모환경오염 (수질/해양)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0(과장) ☎044-201-7069(사무관) ☎044-201-7062(주무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0(과장) ☎044-200-5283(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433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032-835-2195 해양환경관리공단 ☎02-3498-8600
⑦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0(과장) ☎044-201-3734(사무관) ☎044-201-3724(주무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교량터널실 ☎055-771-1671 (夜 1599-4114) 한국전력 지중운영부 ☎061-345-4830~5 (夜 061-345-5203)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평가실 ☎031-910-407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한국전력 종합상황실(배전) ☎061-345-8622 전기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63-716-2117, 9 지역난방공사 재난안전부 ☎031-780-4471 (夜 031-8018-6480)
⑧ 댐 붕괴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01-7611(과장) ☎044-201-7612(사무관) ☎044-201-7617(주무관)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처 ☎042-629-3502 물관리종합상황실 ☎042-629-3511
⑨ 지하철대형 사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0(과장) ☎044-201-4601(사무관) ☎044-201-4609(주무관)	철도공사 ☎042-615-4800 서울도시철도 ☎02-6311-2121 서울메트로 ☎02-6110-5091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주) ☎02-2656-0020~1 (1단계 운영사)서울9호선운영(주) ☎02-2656-0550, 0552~4, 0556~8, 0568~9 (2단계)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02-2656-2721~4, 신분당선 ☎031-8018-7610 부산교통공사☎051-640-7034 인천교통공사 ☎032-451-2510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0-2360 대전도시철도공사 ☎042-539-3881 광주도시철도공사 ☎062-604-8152 공항철도 ☎032-745-7185
⑩ 고속철도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0(과장) ☎044-201-4601(사무관) ☎044-201-4609(주무관)	철도공사 운영상황실 ☎042-615-4800 철도시설공단 재난안전부 ☎042-607-3352 ㈜에스알 재난안전상황실 ☎02-6177-8391

재난유형	주 관 기 관	유 관 기 관
⑪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0(과장) ☎044-205-7477(계장) ☎044-205-7478(소방위)	한국가스공사 재난총괄부 ☎053-670-0407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750-1300~4 한국전기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63-716-2117~9
⑫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 방재환경과 ☎02-397-7351(과장) ☎02-397-7357(사무관)	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657 ☎042-861-4041(상황실) ☎042-868-0402(당직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행정안전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044-205-6176
⑬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① 방역정책과 ☎044-201-2511(과장) ☎044-201-2522(사무관) ☎044-201-2523(주무관) ②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1(과장) ☎044-201-2555(사무관) ☎044-201-2556(주무관) ③ 구제역방역과 ☎044-201-2531(과장) ☎044-201-2532(사무관) ☎044-201-2533(주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054-912-0366, 036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3
⑭ 감 염 병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043-719-7790, 7878, 7945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043-719-9050(과장) ☎043-719-9061(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5~8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8, 5776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⑮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660(과장) ☎044-202-6671(사무관) ☎044-202-6672(주무관)	KT 네트워크관제센터 ☎02-500-6000 SK텔레콤 네트워크관리센터 ☎031-710-5555 LGU+ 무선망관제팀 ☎02-6920-1700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관리센터 ☎02-1670-6119
⑯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02-2100-2790(과장) ☎02-2100-2811(수석전문관) ☎02-2100-2794(사무관)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감독팀 ☎02-3145-7415(팀장) 금융보안원 보안관제팀 ☎02-3495-9320(팀장)

재난유형	주 관 기 관	유 관 기 관
⑰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 방재환경과 ☎02-397-7351(과장) ☎02-397-7359(사무관)	한국수력원자력 위기관리실 ☎054-704-3333, 야 22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1-4041, 868-0402(당직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7 행정안전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044-205-6176
⑱ 전 력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380(과장) ☎044-203-5199(주무관)	한국전력 종합상황실 ☎061-345-8622(배전), 8624(송전) 한국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 ☎061-330-8810~1 (夜 관제운영센터 061-330-8840)
⑲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0(과장) ☎044-203-5219(주무관)	대한송유관공사 SHE팀 ☎031-779-9454 (夜 종합통제실 9333) 한국석유공사 안전환경처 ☎052-216-2902~3 (夜 3080)
⑳ 보건의료	<①의료서비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0(과장) ☎044-202-2471(사무관) ☎044-202-2477(주무관) <②의약품공급>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90(과장) ☎044-202-2486(서기관) ☎044-202-2491(주무관) <③혈액수급>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0(과장) ☎044-202-2949(사무관) ☎044-202-2946(주무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33-811-0010
㉑ 식 용 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0(과장) ☎044-201-7126(사무관) ☎044-201-7115(직원)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 ☎042-629-3610

재난유형	주 관 기 관	유 관 기 관
㉒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6(과장) ☎044-201-4018(사무관) ☎044-201-4019(주무관)	한국도로공사 재난종합상황실 ☎054-811-1194~5 당직실 ☎054-811-1004~5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처 ☎042-615-4112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4 한국석유공사 안전환경처 ☎052-216-2902~3(재난관리팀) 2943(안전환경팀)
㉓GPS 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0(과장) ☎044-202-4958(주무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 ☎02-3400-2281~3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044-205-5253 국방부 정보본부 ☎031-788-0217 합참 전자전과 ☎02-748-3231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6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80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05 해양경찰청 경비과 ☎032-835-2144
㉔우주전파재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0(과장) ☎044-202-4958(주무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064-797-7062~65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44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합참(전파관리과) ☎02-748-5767 / 02-748-263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51/5243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6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80 기상청 위성기획과 ☎070-7850-5701/5735

재난유형	주 관 기 관	유 관 기 관
㉕ 기 타 (항공기사고 등)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4(과장) ☎044-201-4245(사무관) ☎044-201-4247(주무관) (해양 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0(과장) ☎044-200-5857(사무관) ☎044-200-5856(주무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팀 ☎044-201-5447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0~6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044-205-8967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145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032-835-204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 사고조사담당 ☎044-200-6121
(문화재사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33(과장) ☎042-481-4821(사무관) ☎042-481-4822(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042-860-9216
(접경지역사고)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01-7611(과장) ☎044-201-7612(사무관) ☎044-201-7617(주무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02-590-6105, 야간 02-590-9920~1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물관리처 ☎02-2150-0321~2 연천포천권지사 ☎031-830-4310
(재외국민 안전사고)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02-2100-8565(센터장) ☎02-2100-8573(사무관)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1(과장) ☎02-2100-8207(사무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1(과장) ☎02-2100-8094(사무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2(과장) ☎044-202-7755(사무관) ☎044-202-7758(전문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상황실 ☎052-703-0110~0113
(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	법무부 보안과 ☎02-2110-3450(과장) ☎02-2110-3390(사무관) ☎02-2110-3393(주무관)	

재난 및 민방위사태 시 국민행동요령

태풍특보시 대비요령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현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Q&A》

Q :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A :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 TV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수구, 배수구, 집주변 축대·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는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오기 전에는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현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태풍이란?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떨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 ❏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 ❏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 ❏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 ❏ 위험한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치웁니다.
-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태풍 주의보 때는

1. 도시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2. 농촌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3. 해안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해안도로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 ☐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경보 때는

1. 도시지역에서는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떨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2. 농촌지역에서는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니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니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해안지역에서는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웁시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가족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시·연·능

- ❖ 시에는 차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시다.
 -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맙시다.
 -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호우 특보시 대비요령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12시간 80mm 이상일 경우 호우 주의보를, 150mm 이상일 경우에는 호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호우 예보 때는

-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알아 둡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 ☐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때는

도시지역에서는..

-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 ☐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촌지역에서는..

-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 집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시다.
- ☐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니다.
- ☐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 후에 이용합니다.
-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 ☐ 집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니다.
-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 해안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합니다.
-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 ☐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연락합니다.
- ☐ 출입문, 창문 등을 잠급시다.
- ☐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니다.
-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와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다.
-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맙시다.

산악지역에서는..

- 산사태 발생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 재배시설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를 합시다.
-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호우 지나간 후에는

- 집에 도착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가스·전기 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 후에 사용합시다.

《Q&A》

Q : 산간계곡에서 고립이나 급류에 휩쓰리지 않기 위한 대비요령은?

A : 산간계곡을 찾는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기상정보와 호우상황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호우 특보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울리면 신속히 대피하시면 됩니다. 고립되거나, 급류를 만날 경우에는 물이 불어난 계곡을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반드시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강풍(돌풍)특보시 대비요령

- 간판 등의 낙하물과 가로수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합니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나 시 · 군 ·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 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커지므로,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유리창 파손 시 흩날림 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에 비산 방지용 안전필름을 붙입니다.



※ 특보기준

명칭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풍속 14㎧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 산지풍속 17㎧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	육상 풍속 21㎧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 산지 풍속 24㎧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

《Q&A》

Q : 강풍특보 발효시 아파트 창문파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

A :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틀고정(젓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강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세요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붙입니다.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해안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옥상이나 집 주위의 빨래, 화분 등 작은 물건은 실내로 옮깁니다.

간판 등과 같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바람에 의해 농약병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방풍벽이나 그물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합니다.



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외출을 삼가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나무나 전신주를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합니다.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합니다.

공사장은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축자재 등이 많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 강풍에 의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해안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강풍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구 분	육 상		산 간	
	보통(풍속)	순간풍속	보통(풍속)	순간풍속
주의보	14m/s이상	20m/s이상	17m/s이상	25m/s이상
경 보	21m/s이상	26m/s이상	24m/s이상	30m/s이상

강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 피해를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접수다.
- 가스, 수도, 전기 등 작동 여부를 확인 합시다
- 시·군·구청 등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시 대비요령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해안가에 접근하지 맙시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접근하지 맙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합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합시다.



※ 특보기준

명칭	주 의 보	경 보
풍 랑	해상풍속 14m/s 이상 (3시간 이상 지속) 유의파고 3m 초과	해상풍속 21m/s 이상 (3시간 이상 지속) 유의파고 5m 초과

《Q&A》

Q : 너울성 파도 대처 요령은 ?

A : 해안가 위험 축대나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 방파제 근처가 가장 위험

풍랑 오기 전에는

-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 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를 알아둡니다.
-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둡니다.
-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합니다.
- ❏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하거나 결박(고정)합니다.
- ❏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호안용 블록)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 어망 부설은 중지하고 철거를 합니다.
-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있는 가재도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신속히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고정)조치를 취합니다.
-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 수산생물의 먹이양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춥니다.
-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합니다.

풍랑 주의보·경보 때는

1. 해안가에서는

-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니다.
-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맙시다.
-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 ☐ 대피를 권유하는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합시다.

2. 해상에서는

- ☐ 항해 중이거나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시다.
- ☐ 항 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 수산시설은

-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합시다.
-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시다.

4. 항만시설은

-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합시다.
-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풍랑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 ☐ 풍랑 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풍랑 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설특보시 대비요령

-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시다.
-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시다.
-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대 설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산지는 신적설 30cm 이상

《Q&A》

Q : 폭설로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고립·정체 되었을 때 행동요령은?

A : 우선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서에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 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합시다.

눈이 많이 내리나요?

- ❶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합니다.
- ❷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❸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시다.
- ❹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시다.
- ❺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❻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시다.
- ❼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라는 기상정보를 들었나요

?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❶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❷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때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와 고립에 대비하여 담요와 양초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 ❸ 염화칼슘, 모래 등을 준비해둡시다.
- ❹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❺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니다.
- ❻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❼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맙시다.
- ❽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에 대해 알아둡시다.

2.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❶ 자가용차량 이용 시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의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 ❷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❸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니다.
- ❹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❺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재배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 ❻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의 비닐은 걷어냅니다.
- ❼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 ❽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 ❾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합니다.



3. 해안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❶ 각종 선박의 적하물을 내리고 단단히 묶어둡시다.
- ❷ 양식시설의 물고기에게 줄 사료를 준비합니다.
- ❸ 염화칼슘, 모래를 준비하고 내 집 앞, 우리 동네의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❹ 방파제, 선착장 등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❺ 해안도로 운행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체인 등 안전장치를 부착합니다.
- ❻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이나 친지 집으로 대피합니다.
- ❼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❽ 라디오·TV·인터넷을 통해 기상정보를 잘 알아 둡시다.
- ❾ 외딴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합니다.

한파특보시 대비요령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헝겊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Q&A》

- Q :** 겨울철 한파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은 ?
- A :** 관할 사도는 종합상황실로, 사군구는 당직실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파 대비 사전에 지자체 긴급지원반이나 업체 비상연락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한파 발령(주의보/경보) 때는

1. 건강관리는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 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쬌어서는 안 됩니다.

2. 운동 때는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한파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 한파 주의보 : 10월 ~ 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 10월 ~ 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해야 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 특히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합니다.

3.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

-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4. 보일러 배관 관리

-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여야 합니다.
-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물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 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5. 외출 때는

-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 자동차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둡시다.
-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을 피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됐을 때는
 -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 동승자가 있으면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 차레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 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쉽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6. 자동차의 안전대책은

-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합니다.
- ❏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아야 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 ❏ 커브 길을 돌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합니다.
- ❏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각종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7. 농촌·축사에서는

- ❏ 보리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난방, 온실커튼, 물 커튼, 축열 주머니 등)
- ❏ 온실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하고 북쪽 벽에는 보온벽이나 방풍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피워 보온해야 합니다.
- ❏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축사 등에는 섯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보온을 해야 합니다.
- ❏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8. 양식장에서는

-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육상 양식장에는 방풍 망을 설치하는 등 보온장비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 장기 기상예보를 알아두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때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때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어류가 동사하면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9. 전기사용 때는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를 사용할 때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문어발식)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 전기 고장 시 즉시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 조작하지 맙시다.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멋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10. 가스시설 관리는

- 가스 잔량을 확인하고자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LPG 싸이폰용기(LPG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합니다.
- LP가스 사용 시, 이상이 발견되면 가스공급자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사용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11. 유류시설 관리는

- 급격한 기온강하로 인한 동파예방을 위해 유류이송배관은 물 빼기 작업을 충분히 하고 부동액을 주입합니다.
- 장치의 동파 때문에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가스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보온 조치합니다.

12. 광산에서는

- 갱 외 주요시설의 노출된 배관에는 보온재, 열선 등을 사용하여 동파를 방지합니다.
- 진입로, 운반도로 등에는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여 빙판길에 대비합니다.
- 한파 대비용 기자재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합니다.

13. 지역난방 시설은

열원시설

- ▶ 겨울철 동파를 대비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상태를 점검합니다.
- ▶ 눈피해와 동파를 대비해 복구용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합니다.
-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 상태를 점검합니다.

사용자 시설(지역난방)

- ▶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온수 분배기 입구의 세대별(관리) 밸브를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 온도조절기 고장 시 난방온수 분배기로 조정하고, 즉시 수리·교체해야 합니다.
- ▶ 난방 배관 내 공기빼기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14. 승강기에서는

-  승강기 기계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기계실 창문 유리의 파손 여부 및 개구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손상 시 교체합니다.
-  피트(최하층 아래의 승강로)의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손상 시 교체합니다.
-  승강장 및 카 바닥 물청소 후 얼음이 얼어 미끄러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승강기의 운행을 장시간 멈췄다 다시 사용할 때, 충분한 예비운전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을 시작합니다.

한파시 정전 대비 방법은

-  손전등, 라디오, 온열기 등을 준비합니다.
-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합니다.

가뭄에 대비합시다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가정에서는 물 절약 습관을 생활화합니다.
-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합니다.
- 개인소유의 우물은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2.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논 · 밭 토양의 수분정도와 농작물의 상태를 잘 살펴봅니다.
- 물이 쉽게 고갈되는 곳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을 잘 알아둡니다.
- 가뭄이 오기 전에 우물과 같은 용수원을 미리 개발합니다.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를 잘 점검합니다.
- 논물가두기, 사용한 물 재사용 등으로 용수를 확보합니다.

폭염에 대비합시다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니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니다.
-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립니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니다.



2.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 ☛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합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합니다.
- ☛ 탄산·알코올·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십니다.

3.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 ☛ 물은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갑니다.
-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습니다.
-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립니다.
- ☛ 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합니다.

4.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 ☛ 실내의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28℃)
- ☛ 한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니다.
-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니다.
- ☛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시다.

- ☐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보살피도록 합시다.
-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 필요시 도움을 줍시다.
-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시다.

6.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합시다.

-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준비합시다.
- ☐ 정전 시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합시다.
- ☐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하고 집안의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모든 전기기구를 꺼두도록 합시다.

7.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합시다.
- ☐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차양을 설치합시다.
-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며,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 사육장 천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혀주도록 합시다.
- ☐ 축사와 운동장의 분뇨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시다.

- ☞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섞은 사료를 먹입니다.
-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않습니다.
- ☞ 모기 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합니다.
- ☞ 비닐하우스의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수막시설을 설치합니다.
- ☞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에 힘씁니다.
- ☞ 노지재배 채소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살수작업을 합니다.

8. 양식 어장에서는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환수량은 최대한 늘이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밀도는 하향 조절합니다.
- ☞ 액화산소를 공급하거나 공기를 불어 넣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읍니다.
- ☞ 물고기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 ☞ 고온과 습기로 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9.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니다.

-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않습니다.
- ☞ 잠들기 전의 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합니다.
- ☞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를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 ☞ 커피,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담배는 삼갑니다.
- ☞ 잠들기 전에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하지 않습니다.
-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항사대비 방법은

1.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에는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기상예보를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조퇴 조치 등 실시

3.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는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4. 실외 문화·체육 행사관련 해서는

- 주의보 이상 발령시 국제 스포츠기구 경기일정에 따른 국제경기의 경우 개최 자제 권고
- 주의보 이상 발령시 친선 국제경기 및 국내 대회 등의 경우 개최 취소 및 연기 권고

《Q&A》

Q : 항사발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청취합니다.

기상청 : www.kma.go.kr 국번 없이 131(지역 기상정보 : 지역번호 + 131)

기상청 : 02-2181-0676~77

황사 예보 때는

1. 가정에서는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합니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습니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니다.
- 외출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니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습니다.

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태평양·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갑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니다.

3.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시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시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시다.
- 비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와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읍시다.

황사 발생(주의보/경보) 때는

1. 가정에서는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갑시다.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시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시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읍시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시거나 연기합시다.

3.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한 적게 합시다.
 - 야외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읍시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읍시다.
-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일정 조정·상품 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합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1. 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줍시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시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시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시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합시다.

3. 축산·시설원예 등에서는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씻거나 소독을 합시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시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시다.

《 황사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 황사 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청취합니다.

기상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기상청 : www.kma.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www.nvrqs.go.kr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 지진 발생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됩니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됩니다.



《Q&A》

Q : 지진발생시 대형건물에 있을 때 대피방법은 ?

A : 소파 혹은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해 몸을 웅크린다.

계단을 대피 공간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외벽쪽으로 대피한다.

복사지, 신문지 등 종이 더미 속으로 대피한다.

지진이 오기 전에는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시다.

※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맙시다.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시다.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시다.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부분을 수리합시다.

※ 가스·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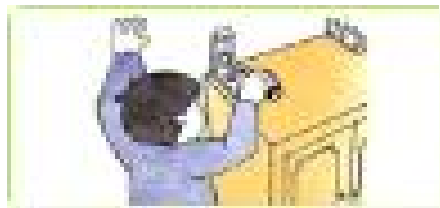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시다.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도 미리 알아둡시다.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시다.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시다.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시다.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시다.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시다.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시다.

1. 지진 국민행동요령

01

지진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둡니다.
-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 ▶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 ▶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 둡니다.
- ▶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 ▶ 건물의 균열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 ▶ 가스,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 머물고 있는 곳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둡니다.
- ▶ 비상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 둡니다.
- ▶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둡니다.



●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를 알아 둡니다

- ▶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 ▶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비상용품

하나, 비상식품
물, 통조림, 라면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둘, 구급약품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지병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셋, 생활용품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넷, 기타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예비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등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 둡니다.
- ▶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둡니다.

▶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

-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 **131ARS**

※ 긴급재난문자, 131ARS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시에는 도로의 손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 두도록 합니다.

● 집에서 나갈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건물 담장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 담장이나 천붕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대피 시 주의 사항

- | | |
|--|--|
| <p>01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p> <p>02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p> <p>03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p> <p>04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p> | <p>05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p> <p>06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p> <p>07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p> <p>08 간헐할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p> |
|--|--|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피합니다

- ▶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큼니다.
- ▶ 사무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학교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피합니다

- ▶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 ▶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니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고층 건물에 있을 때에는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합니다

- ▶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고층건물은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때에는
장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ㄱ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 ㄴ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때에는
우선 자리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 ㄱ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며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 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에는
즉시 내립니다

- ㄱ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야 합니다.
- 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ㄹ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에는 서서히 차를 멈춥니다

- ㉠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웁니다.
- ㉡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에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 ㉢ 운전 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에 의하여 제대로 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변을 충분히 살펴면서 교차로를 피하여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 전철을 타고 있을 때에는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 ㉠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산이나 급한 경사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주변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하나,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 (지역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둘,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셋,

수도관의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급니다.

하수관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살고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 ▶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빨리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 해안에서 지진을 느껴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합니다.



- ▶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시간동안 여러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진해일 발생 조건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 지역에 약 3~4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지진은 왜 일어날까요?

지진은 지구를 구성하는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판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 부딪치면서 힘을 저장해 놓는데, 이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통해 나올 때 땅의 변형이 발생하면서 일어납니다.

지진은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전진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 내에서 가장 큰 지진 전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
본진 어떤 진원 부근(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진
여진 본진 뒤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

Q2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2016년 11월말까지 1,450여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입니다.

Q3 활성단층은 무엇일까요?

활성단층은 최근 지질시대에 활동하였고,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합니다.
이 단층은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활성단층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구조론

지구는 10개가 넘는 판들이 퍼즐 조각처럼 서로 쏘개져 맞물려 있습니다. 판이 맨틀 위를 1년에 수 cm 이상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판은 서로 부딪치면서 점차 압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 압력이 매우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암석이 갈라지고, 그 충격파가 땅을 흔들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판)



Q4 규모와 진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규모(Magnitude)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지진파가 관측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규모는 같습니다.

▶ 표현방식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숫자로 표현 규모 3.8

진도(Intensity)는 어떤 장소에서 느끼는 지진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큰 지진이라도 아주 멀리서는 그 영향이 작아져 진도도 작아지며, 같은 지역에서라도 지반조건이나 건물상태 등에 따라 진도가 달라집니다.

▶ 표현방식 : 로마자로 표현 진도Ⅳ

▶ 규모 1.0마다 약 32배씩 에너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규모 3.0과 규모 5.0은 약 1,000배($32 \times 32 \approx 1,000$)의 에너지 차이가 납니다.

진도Ⅰ

▶ 사람이 거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 나타나지만, 지진계는 감지할 수 있다.

진도Ⅱ

▶ 떠돌던 물건이 약하게 흔들리며, 몇몇 사람들이 느낀다.

진도Ⅲ

▶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이 있다.

진도Ⅳ

▶ 멈춰 있는 자동차가 흔들린다.

진도Ⅴ

▶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며,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한다.

진도Ⅵ

▶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낀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거나 벽에 균열이 갈 수 있다.

진도Ⅶ

▶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운전자들도 흔들림을 느낀다.

진도Ⅷ

▶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가동·가림비·벽 등이 무너진다.

진도Ⅸ

▶ 모든 건물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에 균열이 가며, 지하 송수관이 파괴된다.

진도Ⅹ

▶ 땅이 갈라지고 기차선로가 휘어진다.

진도Ⅺ

▶ 다리가 무너지고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긴다.

진도Ⅻ

▶ 물건이 공중으로 튀어나가며 땅 표면이 파동이 보인다.

Q5 지진이 발생하면 왜 탁자 아래로 숨어야 하나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깨진 유리창, 떨어지는 물건 및 벽돌 등에 맞아 다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바로 대피하는 것보다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우선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건물에서 꼭 나가야 하나요?

지진으로 인한 손상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면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7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공 청사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 중에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표시가 붙어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2005년부터 지은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Q8 지진으로 인하여 불이 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아는 순간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 서로 도와 초기에 불을 끄는 것이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9 우리 동네 지진대피소는 어디인가요?

지진대피소는 국가공간정보(www.nsd.go.kr) 및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대피소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주변의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여야 하니 주변의 공원과 운동장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진대피소 지정현황 ('17.3월기준)

'지진 옥외대피소'는 운동장·공터 등 구조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7,66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지진 실내구호소'는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전국 2,276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Q10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규모 지진으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귀가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주거시설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진 피해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귀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11 여진은 끝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여진이 끝나는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진 발생 이후 여진의 횟수 및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을 관측하는 기상청 홈페이지 및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행동요령을 알아둡니다.

지진은 암반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규모 9.0)의 경우, 1년간 8천여건이 발생하였고, 3년 동안 총 1만여건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진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어 여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Q12 지진해일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지진해일은 수심이 1km이상인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서쪽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저 지진으로 인하여 주로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해안까지 지진해일이 도달하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동해와 삼척은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지진해일의 다른 이름은 “쓰나미”입니다.

지진해일(Tsunami)이라는 단어는 쓰나미(津波)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하였으며, ‘Tsu’는 ‘항구’, ‘na mi’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일본 신리쿠 연안(1896년 6월)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알려지면서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었습니다.

Q13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의 긴급대피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피난을 목적으로 1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정해놓은 곳입니다.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정현황 ('16.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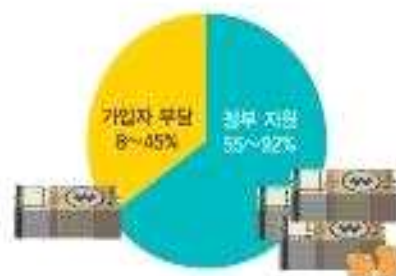
4개 시·도, 22개 시·군·구에 618여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해 두고 있으며,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4 지진 피해를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물수해보험에 들면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도 지진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물수해보험에 가입하실 분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나 아래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보험사 가입 문의 번호

- 동 부 화 재 : 1588-0100 또는 02-2100-5103
- 현 대 해 상 : 1588-5656 또는 02-2100-5104
- 삼 성 화 재 : 1588-5114 또는 02-2100-5105
- K B 손 해 보 험 : 1544-0114 또는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또는 02-2100-5107

물수해 보험 주요내용

- ▶ 지원율 : 일반 55%, 차상위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 파손
- ▶ 상품종류 : 주택, 온실 정액보상형 / 주택, 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 /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형

[예시]

- 대상규모 : 단독주택 80㎡, 26평의 상품 I 기준
- 보험료 : 총 39,000원 중 주민 부담 17,500원
- 보험료
전 파 : 7,200만원 (주택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반 파 : 3,600만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의 30㎡이상 수선해야 하는 경우 등)
소 파 : 1,500만원 (벽면의 5㎡이상 수선해야 하는 경우 등)

전국 지진체험관 현황





우리집 지진대비 현황을 체크해 봅니다



- ☐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였습니다.
- ☐ 창문, 그릇장의 유리가 깨졌을 때 흩어지지 않도록 투명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 두었습니다.
- ☐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 ☐ 불을 사용하는 장소 주위에 소화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 텔레비전이나 꽃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 ☐ 집안에 흩어진 유리 조각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 ☐ 건물이나 담장 등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수리하였습니다.
- ☐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를 알아두었습니다.
- ☐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 | | | |
|--------------------------------|------------------------------------|------------------------------|
| ☐ 물 | ☐ 통조림 | ☐ 라면 |
| ☐ 연고 | ☐ 감기약 | ☐ 소화제 |
| ☐ 라디오 | ☐ 손전등 및 건전지 | ☐ 비상금 |
| ☐ 간단한 옷 | ☐ 화장지, 물티슈 | ☐ 라이터 |

- ☐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 ① 가족 연락처 : _____
- _____
- ② 우리지역 재난관리기관 : _____
- ③ 우리집에서 가까운 대피 장소
- ① _____ (약속장소) ② _____ ③ _____

알아둡니다

재난 정보를 알수 있는 기관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기상청 : <http://www.kma.go.kr>
-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www.safekorea.go.kr>
- 응급의료포털 : <http://www.e-gen.or.kr>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_____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 재난신고 119
- 범죄신고 112
- 민원상담 110

2. 지진 발생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리플릿)

지진 시 행동요령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장소별 행동요령

집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옵니다.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여,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실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 경기장에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스치듯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신사태, 해역 형기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폭보가 발견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http://www.mps.go.kr>

지진해일 (스나미) 행동요령

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는

-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함시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함시다.
- 지진해일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함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越流)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함시다.

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는

- 해안가 주민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뒤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할 수 있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고, 이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때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1. 지진해일 내습시 주의사항

- 일본 서해안에서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이 보고되면 지진해일 발생을 우려해야 한다.



- 연안 주민들은 항상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것이 좋다.
- 또 이러한 정보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알려 위험에 대비한다.
- 또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 하여 주민 모두에게 알린다
- 일본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뒤에 해일이 도달 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정리하고 위험물 (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시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고지대로 피난해야 한다.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 등이 없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2. 지진해일 내습시 선박위에 있다면

-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자신이 만일 대양에 있고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한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질서를 유지해가며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정박은 피해야 한다.

3. 자주적 방재활동을 위한 지진해일에 관한 상식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후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하는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동해안에 내습하는 지진해일의 파고는 최대 3~4m 정도 이다. 이로 인해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되기 쉽다.
-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의 초동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어 항 바닥이 들어 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여러 차례 열을 지어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길게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의 내습 속도는 사람의 거동보다 빠르고, 그 힘이 우세하여 약 30cm의 정도의 해일 상황에서 성인이 걸을 수 없고,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목조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 해안가의 선박이나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가옥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내습한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해일 특보시 국민행동요령

해일특보시 대비요령

-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 등을 주의 깊게 들으시다.
- 해안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알아둡시다.
-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시다.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합시다.
-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합시다.
- 1 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 목조 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 복합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별도 지정)	좌동

《Q&A》

Q : 폭풍해일 피해방지 행동요령은 ?

A : 평소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나 해일경보 등 수시로 확인하여 폭풍해일이 예상될 경우 신속히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화산폭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산재 낙하전 준비사항

- 화산재 낙하에 대비하여 방진 마스크, 예비 의약품, 손전등 등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둔다.
- 문이나 창문을 닫고, 물을 묻힌 수건을 문의 빈틈이나 환기구에 둔다.
-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일 경우는 실내에 머무르고, 불필요하게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방재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실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게임이나 놀이를 준비한다.
- 현금 자동 지급기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액 현금을 준비한다.



화산재 낙하중 해야할 일

-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한다.
- 실외에 있을 경우, 피난 시설(차나 건물 등)을 찾는다.
- 자신이 있는 지역의 라디오 등 방송을 듣고 화산분출이나 청소 계획의 정보를 모은다.
- 각막에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콘택트렌즈(contact lens)를 착용하지 않는다.
- 가정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는 먹어도 무방하지만 먹기 전에 잘 씻는다.

화산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

-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추천 마스크를 사용하고, 만약 없으면 젖은 천을 사용한다.
- 사다리나 지붕에 오를 때에는 화산재에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건물에 들어갈 때에는 밖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 입고, 몸도 깨끗이 씻는다.
- 단단한 바닥을 청소할 때는 적신 자루걸레나 천을 사용한다.
- 컴퓨터나 TV, 라디오 등은 진공청소기나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청소하기 전에 기기의 주 전원을 반드시 끈다.
- 어린이는 실내에 머무르도록 하고, 화산재가 날리는 중에는 놀지 않도록 지도한다.

《Q&A》

Q : 화산재가 떨어지기전 취해야 행동요령은 ?

A : 만약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일 경우는 실내에 머무르고, 불필요하게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축의 식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한다.

깨지기 쉬운 전화제품에 커버를 하고, 주위의 화산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커버를 치우지 않는다.

가뭄시 국민행동요령

가뭄 대비 방법은

도시지역에서는



- 가정에서는 식기류 세척·세수·샤워 시 물을 받아 사용합시다.
- 가정에서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합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합시다.
- 개인소유의 우물(관정 포함)은 공동으로 이용합시다.

농·어촌지역에서는

- 논·밭 토양의 수분 정도와 농작물의 상태를 잘 살펴봅시다.
- 농작물에 피복(멀칭)이 가능한 곳에서는 벧짚, 비닐 등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정비 및 비닐깔기 등을 합시다.
- 물이 쉽게 고갈되는 곳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을 잘 알아둡시다.
- 가뭄이 오기 전에 관정·우물과 같은 용수원을 미리 개발합시다.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수리 불안전 답 지역에서는 논물가두기 등 물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함시다.
- 도열병, 해충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함시다.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 함시다.



생활에서 물 절약 방법

- 식기류 세척·세수 시 물을 받아 사용함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함시다.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함시다.
-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함시다.
- 샤워는 최대한 짧게 함시다.
- 양치질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함시다.
- 세차를 할 때는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후 세차 함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함시다.
- 개인소유의 우물(관정 포함)은 공동으로 이용함시다.



《Q&A》

Q : 가뭄 대피요령은 ?

A : 일상생활에서는 물절약, 업소에서는 물을 적게 사용, 허드렛물 재활용 농촌에서는 수로나 양수기 점검, 논물 가두기, 병충해 방지에 철저

홍수 예·경보시 국민행동요령

홍수 예·경보시 대비요령



-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 홍수 예상 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합시다.
- 침수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 후에 사용합시다.

홍수 특보기준 :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에서 수계별 주요지점 **홍수 예·경보 기준수위**에 따라 발령함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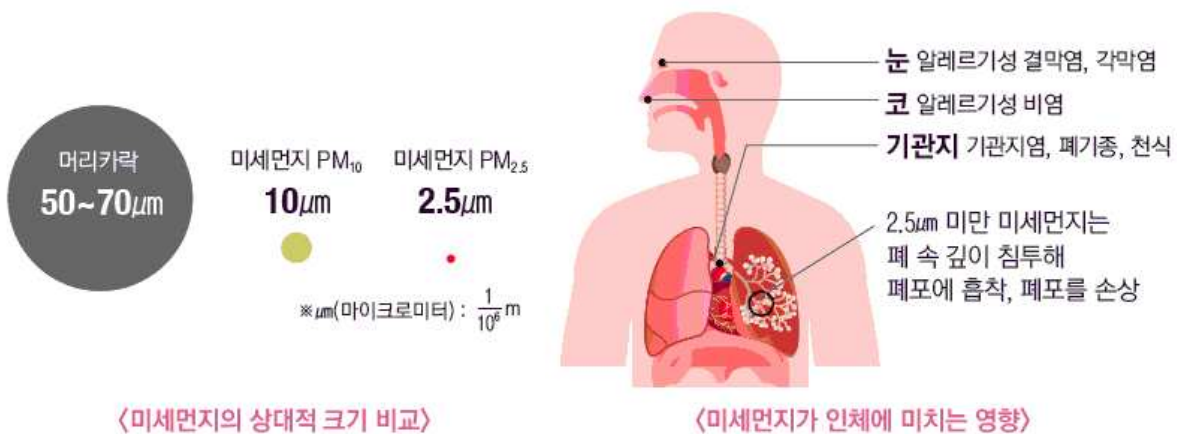
Q : 저지대 주택에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주택에 들어가기 전 행동요령은 ?

A : 침수된 주택은 가스누출,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환기를 시킨 후, 가스·전기 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 하시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시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내에 유입될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예보구간		구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 (μ m/ m^3 , 일)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0~15	16~50	51~100	101이상
예측농도 (ppb, 1H)	O3	0~30	31~90	91~150	151이상
행동요령 (미세먼지)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기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행동요령 (오존)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활동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정보기준 및 행동요령

※관련근거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정보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항목		주의보	경보
PM10	발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20\mu\text{m}/\text{m}^3$ 이상 또는 시간평균 농도 $20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250\mu\text{m}/\text{m}^3$ 이상 또는 시간평균 농도 $40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00\mu\text{m}/\text{m}^3$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150\mu\text{m}/\text{m}^3$ 미만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20\mu\text{m}/\text{m}^3$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200\mu\text{m}/\text{m}^3$ 미만
PM2.5	발령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65\mu\text{m}/\text{m}^3$ 이상 또는 시간평균 농도 $12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50\mu\text{m}/\text{m}^3$ 이상 또는 시간평균 농도 $250\mu\text{m}/\text{m}^3$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50\mu\text{m}/\text{m}^3$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100\mu\text{m}/\text{m}^3$ 미만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150\mu\text{m}/\text{m}^3$ 이상~ $250\mu\text{m}/\text{m}^3$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 $200\mu\text{m}/\text{m}^3$ 이상~ $400\mu\text{m}/\text{m}^3$ 미만
행동요령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미세먼지의 특성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직경(약 $60\mu\text{m}$)의 $1/20 \sim 1/80$

※ $1\mu\text{m} = 1/10^6\text{m}$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서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화기 사용요령은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Q&A》

Q :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A :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방호조사과 044-205-7264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철(12 ~ 2월)이며 이는 겨울에 불의 사용도가 높고 취급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화재가 다발하는 계절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나, 기온이 낮은 겨울이나 봄에 많으며, 이는 습도 및 계절풍과 관련 있습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A》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3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건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는

-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될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 깨지듯이 날 때
- 개를 비롯한 동물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평소와 달리 불안할 때

■ 건물 내부에 있을 때는

- 건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으세요.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건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합니다.
- 평소에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해 둡시다.

■ 건물 외부에 있을 때는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붕괴지역 주변의 보행할 때나 이동 때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Q&A》

Q : 잔해에 깔려 있을 때 행동은 ?

A :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구조를 요청한다.

-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휴대전화 119에 신고한다.
- 잔해에 끼이면 혈액순환이 잘되게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인다.
-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국토부 건축기획과 044-201-3758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건축물/시설물 붕괴 예방요령

건축물/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방법은 정기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2년에 한번씩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가스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폭발사고 예방은

-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체류가스를 밖으로 내 보내는 등 즉시 환기를 하고, 전기스위치나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 등에서는 집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안전밸브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축전지는 장시간 또는 고온의 장소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금속물질과 함께 보관하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맙시다.
-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배출한 후 버립시다.
- 여름철에 가스라이터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자동차에 두고 내리지 맙시다.
- 의심이 되는 폭발물을 발견 시에는 마음대로 분해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합시다.

☞ 폭발사고 발생했을 때는

- 건물 안에서는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폭발사고 때는 굉음으로 청각 장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귀를 막고 대피합시다.
- 폭발사고 시에는 멀리 떨어진 장소, 차폐 벽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 연기와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먼저 옮긴 후에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추가 폭발에 대비 전기 스위치와 화기사용 등을 급하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Q&A》

Q : 가스폭발사고 예방 및 대응법은 ?

A :

- 예방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기, 화기 사용을 금지.
-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배터리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금속과 함께 보관하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 대응법으로는 2차 폭발에 대비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폭발사고때는 굉음으로 청각을 다칠수 있으니 귀를 막고 대피
- 질식에 대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에 주의해 대피

*자료제공 : 산업부 가스산업과 02-2110-5462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폭발사고 주의

2005년~2007년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사고의 경우, 모두 1,637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중 120명이 사망하였으며, 폭발사고는 이 기간 중 1,279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중 7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전기사고 발생시 연락처

한국전력 고장신고서 123, 전기안전공사 1588-7500

간편한 가스 점검 방법

세제를 물과 섞어서 붓에 묻혀서 호스의 연결부위에 바르고, 이때 비누방울이 생기면 누출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승강기사고 예방요령

1. 정원 및 적재하중을 넘지 않을 것
2. 어린이,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탈 것
3.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억지로 열지 말 것
4. 버튼이나 스위치를 난폭하게 다루지 말 것
5. 고장, 점검 중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타지말 것
6. 문틈이나 승강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 승강기 사고 발생시 연락처

- 1566-1249(엘리베이터사고)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율

- 1위 교통사고
- 2위 추락사고
- 3위 물놀이사고
- 4위 화재사고
- 5위 중독사고
- 6위 기타사고(놀이안전,범죄)

유도선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유 · 도선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유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유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 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 폭약, 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Q&A》

Q : 유·도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

A :

-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이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수난사고

상식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식용수 국민행동요령



급수중단 발령시

-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식기세척 및 요리하실 때에 불편하시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병물을 사용하시거나,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시 이후로 병물 및 급수차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급상황 발생시

- 끓이지 않은 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물을 1분가량 끓이신 후 식혀서 사용하시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들이 파괴되어 안전합니다.

II 급상황 발생시

-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기간 동안에는 끓여 마실 것을 권합니다.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히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샤워시(특히 온수) 살수효과에 의해 냄새물질이 쉽게 휘발하여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꼭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Q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

A :

- 수질오염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5

지하철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지하철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여의치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 스크린도어(PSD)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갑니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 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니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합니다.

《Q&A》

Q : 출입문을 수동으로 어떻게 열 수 있나요 ?

A :

- 1 출입문 쪽 의자아래 또는 벽면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 2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거나, 빨간색 비상핸들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 3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 4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서 여세요.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044-201-4825, 4614

고속철도 화재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고속철도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 차량 출입문 옆에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객차로 이동합니다.
- 기관사 및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합니다.
- 승무원이 승강문을 개방하면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필요시, 비상사다리 설치)
-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 승강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비상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 반대선 선로에는 절대로 대피하지 않도록 하고, 선로변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 터널내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 및 비상대피소로 이동합니다.
- 안전한 장소에서 구급차, 구원열차, 버스 등 연계수송 교통수단을 기다립니다.

고속철도사고 및 테러(독가스)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고속철도 탈선·충돌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 기관사 및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합니다.
- 승무원이 승강문을 개방하면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필요시, 비상사다리 설치)
-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 승강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비상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 반대선 선로에는 절대로 대피하지 않도록 하고, 선로변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 터널내에서는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 및 비상대피소로 이동합니다.
- 안전한 장소에서 구급차, 구원열차, 버스 등 연계수송 교통수단을 기다립니다.

■ 고속철도 테러(독가스) 발생시 대피요령

- 차량 출입문 옆에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연락합니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객차로 이동합니다.
- 기관사 및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합니다.
- 승무원이 승강문을 개방하면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필요시, 비상사다리 설치)
-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 승강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비상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 반대선 선로에는 절대로 대피하지 않도록 하고, 선로변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 터널내에서는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 및 비상대피소로 대피합니다.
- 안전한 장소에서 구급차, 구원열차, 버스 등 연계수송 교통수단을 기다립니다.

《Q&A》

Q : 고속열차 승강문을 수동으로 어떻게 열 수 있나요 ?

A :

- 1 승강문 왼쪽 상단 에어제거 버튼을 내립니다.
- 2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승강문 쉐정버튼이 밖으로 나옵니다.
- 3 승강문 쉐정버튼을 잡아당깁니다.
- 4 승강문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승강문 손잡이를 옆으로 잡아당겨 문을 엽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044-201-4825, 4614

원전시설 방사능 누출시 행동요령



■ 국민보호조치 발표가 있을 경우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며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 등입니다.

■ 방사능구름 통과시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
-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 대응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의 섭취금지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먹음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환기구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

옥내대피 및 소개시

- 전기 및 가스, 환기설비 등을 끄고 수도꼭지를 잠금
- 담요,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고 소개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 금지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
-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및 저장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 금지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Q&A》

Q : 상황 종료시 복귀시에는 ?

A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외 접근금지하며, 대응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하지 말고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자료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6

공동구재난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공동구재난 발생 우려시

- 거주지역 인근에 공동구가 있을 경우, 공동구관리자(지자체, 공단 등)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공동구 설치지역 : 서울(목동, 여의도, 개포, 가락, 상계, 상암), 대전(둔산), 부산(해운대), 인천(연수, 송도), 광주, 경기(부천,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수원, 안산), 충북(오창), 전남(여수), 경북(구미), 경남(창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의 비상연락망을 확인·유지하고 공동구재난시 비상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공동구 재난으로 인한 라이프라인(전력, 통신, 상수 등) 단절 등에 대비하여 간단한 식료품, 생필품 및 의약품, 라디오 등의 비상물자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 재난 발생 시

- 재난(화재 등) 발견 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폭발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소방서(119) 및 관할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합니다.- 공동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화재 및 파괴 등에 따른 폭발, 도로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 전력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대피 시에는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호흡기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풍향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고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
- 재난방송 청취 등 상황전개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라디오 등을 소지하여 재난온라인방송 청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지속 확인합니다.
- *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라디오 등을 소지하여 재난온라인방송 청취,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지속 확인
- 안전이 확인된 이후 이동 및 귀가합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무분별한 이동을 자제하고 추가적인 공동구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 인근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무분별한 이동 자제
- * 추가적인 공동구 재난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 인근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
- 집에 도착한 후에 전력, 통신, 상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자체 및 한전, KT, 상수도사업소 등에 점검 및 복구 요청합니다.

《Q&A》

Q : 공동구란 무엇입니까?

A : -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선로, 통신선로, 상·하수도관, 열수송관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로중 복굴착방지, 도시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중(地中)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공동구는 지자체가 관리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재난(화재, 파손 등) 발생 시 직접적인 인명 피해의 우려는 적으나, 재난 발생 시 전력, 통신, 상수 등 단절에 대비한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화재 시 환기구를 통해 유독가스가 배출 될 수 있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4

대규모환경오염(수질)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대규모수질오염사고시 대응

- 수질오염사고 지역 및 영향권역에서는 낚시, 수영, 보트놀이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 인근 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호소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지역 접근이나 출입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 수질오염 구별법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 수면 위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때
- 하천·호소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Q&A》

Q : 수질오염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수질오염행위를 목격하시거나 오염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7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국민행동요령



■ 구제역 발생시 증상은?

소

-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 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되고,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돼지

-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합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닭

-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붉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오리

-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을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임.

■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 농장 및 축사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갑자기 가축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축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축주·관리자·가족), 가축·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니다.
-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축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니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니다.
- 만일, 관내 모든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축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니다.

《Q&A》

Q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A :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각 시·도(시·군, 가축방역기관 : 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축산농가 및 축산업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8, 2359 (구제역), 방역관리과 044-201-2377, 2378 (조류인플루엔자)

댐 붕괴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댐 붕괴 우려 시

- 댐 붕괴 징후(대규모 홍수 및 지진 발생시)가 발생할 경우, 댐관리기관-지자체-정부에서 경고방송 및 재난방송을 실시하므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 물에 빠진 후

- 침수에 대비하여 가스를 잠그고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두며,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지역 주민(마을대표 등)간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댐 붕괴 시 해당지역의 비상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동선(대피로)과 대피방법을 확인합니다.

《Q&A》

Q : 댐 붕괴가 발생할 경우, 관련정보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A : 댐 관리 기관에서는 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붕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관별로 다중화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홍수 및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셔야 합니다

- 댐 관리기관 : 댐 직하류 경보방송 실시
- 지자체 : 방송사 및 언론사를 통한 재난방송(자막) 송출
- 정부(행정안전부) : 대국민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서비스 전송

*자료제공 :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044-201-3611

전력분야 정전시 국민행동요령



불시 정전 사전대비 방법은

- 불시 정전에 대비 가정 내 손전등, 비상식 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둡시다.
 - 전기기기(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회로를 구성 또는 전용콘센트를 사용합시다.
 -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정전신고와 전기상담은 국번 없이 123(한국전력공사 콜센터), 구조요청은 119 입니다.

불시 정전 때는

우리집만 정전이 된 때는

-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옥내 주택용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 옥내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업체에 의뢰 수리합시다.
- 옥내 전기설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한전에 연락합니다.

이웃집과 같이 정전이 된 때는

- 대부분 한전 선로 고장인 경우로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는 단지 내 선로 및 전기설비의 고장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이 될 때는

- 정전 등으로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정전으로 운행이 정지되면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하고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맙시다.

*엘리베이터 정전시 구조요청은 119 입니다.

불시 정전 때는

- 전기가 재공급되면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꽂습니다.
- 시간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방지가 가능합니다.
- 냉동식품을 점검합시다
-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립니다.

《Q&A》

Q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정전이 되면은 ?

A : 정전 등으로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합니다. 정전으로 운행이 정지되면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하고 임의 탈출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버튼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고 안될 시에는 앞에 승강기번호 일곱자리를 119상황실에 연락주시면 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산업부 전력산업과 02-2110-5476

금융전산(보이스피싱) 국민행동요령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법')의 구제대상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남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흐름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100% 피싱)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Q&A》

Q :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금 환급은 어떤 과정이 중요한가요?

A :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피해예방방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국번없이 133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은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셔야 합니다.
- 이외 요리시, 설거지시, 손을 씻거나 양치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는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여행객은 귀국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Q&A》

Q :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A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754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발생하기 전에는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염사고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 업체의 비상연락망을 미리 알아둡니다.
-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약품,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니다.
- 향후 해양오염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소득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 발생시에는

- 오염사고 목격 시 **행정안전부**(혹은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지자체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 관계기관이 도착하면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현장 안전관리 계획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 합니다.
- 방제물품 등을 배부 받고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교육을 숙지합니다.
- 방제작업 동원 시 마스크와 안전복 등을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사전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지시에 따라 사고수습을 지원합니다.



- 위험지대에 거주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하며, 대피할 때에는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 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유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대책본부 설치 및 재정, 물품, 인원 등 사고수습을 지원합니다.
- 해양오염사고 발생 상황 및 이동경로를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전파 합니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물에 접촉된 경우, 비누로 깨끗이 씻읍시다.

■ 조치 완료 후에는

-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제적 손실 여부를 점검하고 보상을 청구합니다.
- 추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 조치합니다.

《Q&A》

Q : 해양오염 사고발생시 어떻게 하면 인적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A : - 위험지대 거주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하며, 대피시에는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유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우선으로 대피시켜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을 먹지 말고, 오염물에 접촉된 경우 비누로 깨끗이 씻읍시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학물질 유출시 대피요령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로 발생한 독성 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Q&A》

Q :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A : 화학물질이 흡수되는 경로는 입, 호흡기, 피부입니다. 따라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좋은 조치는 화학사고 발생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의나 비닐을 착용하고, 수건, 마스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코, 입 등을 감싸고 대피한 후 안전한 곳에 와서는 새 옷으로 갈아 입으셔야 합니다. 옷에도 소량의 독성물질이 묻어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Q : 평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대한 응급조치 정보 등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A : 화학사고응급대응정보시스템(<http://ceis.nier.go.kr>)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에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 TF 044-201-6839

니트로글리세린 누출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니트로글리세린이란?

- 니트로글리세린은 옅은 노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 유독한 폭발성 액체입니다.
- 열, 화염, 마찰 또는 충격에 매우 민감한 물질입니다.

응급조치 요령



- 흡입했을 경우 자극적이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동시키고 호흡이 멈췄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20분 이상 씻어야 합니다.
- 눈에 들어갔을 경우 홍반이나 자극이 없어도 눈을 씻어낸 후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 콘택트렌즈를 끼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합니다.
- 즉시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면서 다량의 물로 20분 이상 씻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입에 들어갔을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경련 등의 발생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Q&A》

Q : 니트로 글리세린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A : 누출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이웃에게 알립니다.

-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누출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출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피하고, 건물내로 대피하였을 경우에는 창문과는 떨어지고 기둥과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 TF 044-201-6839

트리니트로톨루엔 누출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트리니트로톨루엔이란?

- 트리니트로톨루엔(TNT)는 담황색의 고체형태이며, 냄새가 없는 고성능 폭약 입니다.
- 격렬한 충격 및 마찰을 가하거나 가열할 경우 폭발할 수 있습니다.
- 가열시 독성물질(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흡)이 나옵니다.

응급조치 요령

흡입했을 경우 숨이 가빠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다량의 물로 피부를 씻어야 합니다.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20분 이상 씻어야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홍반이나 자극이 없어도 눈을 씻어낸 후,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콘택트렌즈를 끼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합니다.- 눈을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20~30분간 씻어주면서 동시에 병원에 연락합니다. 입에 들어갔을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경련 등의 발생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메스꺼거나 구토가 나도 구토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으면, 물을 1~2잔을 마시게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경련이 있거나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어떤 것도 마시게 하면 안 되며, 기도를 열고 머리를 몸 보다 낮게 눕힙니다.

《Q&A》

Q :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누출되어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A : 누출될 경우에는 누출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119에 신고합니다.- 건물 내로 대피하였을 경우에는 창문과는 떨어지고 기둥과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소화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소화합니다. (대피가 우선).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제조안전예방과 02-6922-0934

민방공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정부에서는

- ▶ 민방공 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민방공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 라디오 · TV · 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
 -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 라디오 · TV · 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 · TV · 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징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
 - 라디오 · TV · 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즉시 TV,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간단한 생활필수품,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하도록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 방독면, 보호의를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음식물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로 잘 포장을 해두고, 우물이나 장독은 비닐이나 뚜껑으로 잘 덮어 두어야 합니다.



- **화학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 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고 외부 오염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합니다.



- **핵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화학/생물학/방사능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격 이후에도 그 일대가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보호장비 착용 및 보호조치를 계속 유지합니다.

인명 · 시설피해시 행동요령



대형건물 파괴 및 화재시 행동요령

포탄,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대형건물이 파괴되면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혼란과 공포심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침착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피합니다.



1. 비상구 확인

→ 가장 가까운 비상구(EXIT)를 찾아 질서있게 이동



2. 비상계단을 이용 대피

→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



4. 건물 밖으로 대피

→ 건물 붕괴를 대비해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로 대피



3. 안전사고 위험 유의

→ 벽돌, 유리 등 건축물 파편물 주의

※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대피의 문제점

- 일정 시간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할 경우 화재, 연기에 노출될 우려
- 엘리베이터가 화재층에 자동으로 멈춰서 문이 열리면 화재와 연기에 노출
-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몰리는 경우 정상 운행이 불가능
- 사고로 인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탑승객이 갇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소화전 호스나 스프링클러의 물이 엘리베이터의 전원이나 배선을 합선시켜 고장 유발

➔ 화재가 발생하면...



- 입과 코를 막고 기거나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밖에 화재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통로로 대피합니다.
- 옷에 불이 붙으면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불을 꺼야 합니다.

➔ 건물 잔해에 갇히면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무리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 손전등, 불빛을 비추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 요청을 합니다.
- 누출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라이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급적 휴대폰, 무전기 등의 발신음을 주기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단전·단수·가스 공급 중단시 행동요령

➔ 단전시 행동요령



정부에서는

- ▶ 정부는 **비상시에도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되, 불필요한 곳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합니다.
- ▶ 단전을 대비하여 병원, 산업시설 같은 주요 시설 및 아파트 단지에는 **비상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각 가정에서는 휴대용 전등 또는 양초, 라이터 또는 성냥, 건전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자제해야 합니다.
- 비상자가발전기는 평시에 정기점검을 하고, 연료를 가득 채워 항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단수시 행동요령



정부에서는

- ▶ 정부는 비상시에 **제한 급수를 실시**합니다.
- ▶ 공동 주택 단지에는 양수 시설 또는 저수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부분 단수 때에는 **급수차량 또는 먹는 샘물 공급업체를 동원**하여 먹는 물을 급수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각 가정에서는 물탱크, 욕조, 양동이 등에 물을 충분히 담아 두고 최대한 아껴써야 합니다.



▶ 가스공급 중단시 행동요령



정부에서는

- ▶ 정부는 비상시에도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계획** 등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가스시설 피해 등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유류와 부탄캔 등의 배급**을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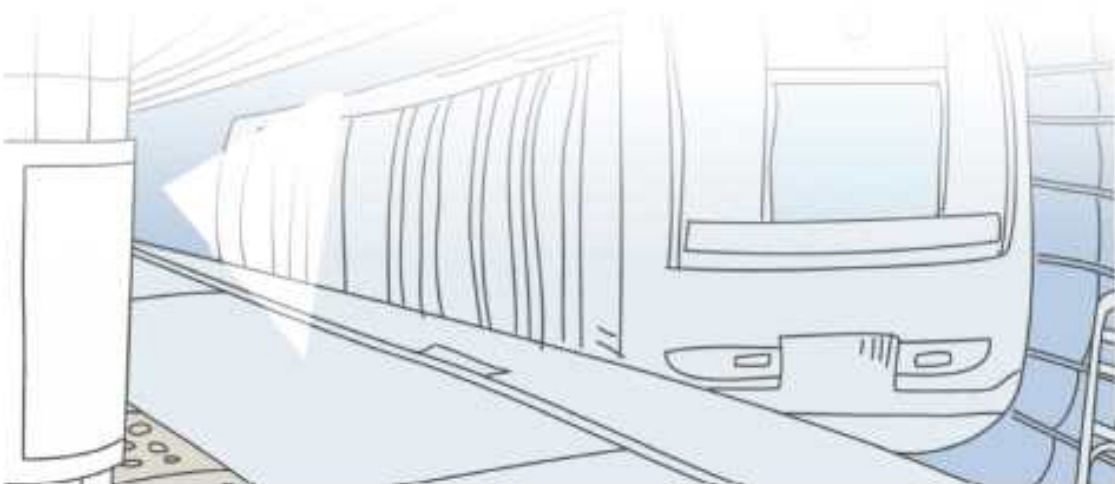
- 평소에 각 가정에서는 휴대용 가스렌지와 부탄캔(15개)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비상시에는 최대한 아껴써야 합니다.





지하철 피해시 행동요령

객실 내 안전장치 설치 위치는 지역·지하철 노선에 따라 다르므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1. 비상인터폰으로 사고 내용을
기관사에게 알리고



2. 화재발생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후



3. 출입문 쪽 비상손잡이를
수동으로 열고 탈출

➡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1. 비상전화로 역무실 또는
사령실에 알리고



2. 비상조명등을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한 후



3. 비상유도등을 따라 지상
으로 대피

➡ 지상탈출이 불가능시 지하터널을 이용합니다.

■ 역과 역 사이 또는 승강장 화재로 지상
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 승강장에 비치된 비상사다리를
이용해 터널로 내려간 후
- 열차 진행방향의 선로를 따라 다음
역으로 이동 대피





인명구조와 시설피해 응급복구요령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긴급 인명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응급조치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국민이라면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구조장비와 구급약을 활용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도와야 합니다.
-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합니다.



- 대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호흡이 편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시설피해가 발생하면

소방서 · 경찰서 · 시 · 군 · 구청 등에 신고하고 복구 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피해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불에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 등을 우선 제거합니다.
- 불발탄, 폭발물 제거 등 특수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
- 각자 가지고 있는 소화기거나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복구 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이나 세제를 활용하여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화학무기 특성 및 공격시 행동요령

화학무기의 특성

※ 수초 내 반응함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호흡곤란, 구토, 피부발진 발생, 이유 없이 새들이 떨어지고 물고기가 죽으면 화학공격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 액체, 가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호흡기 또는 눈과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됩니다.
- 화학무기 오염 시 호흡곤란, 근육경련, 피부화상, 폐염증 등을 유발시키고 오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방독면 또는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34page, 화생방 대비물자 종류와 사용요령 참고



➡ 지형, 풍향을 고려해 신속히 대피합니다.



-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 건물 상층부나 고지대로 대피하고,
- 오염지역 위치와 풍향에 따라
 - 내 위치에서 오염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 오염지역에서 내 위치로 바람이 불 때는 ➡ 좌/우측 방향으로 대피

➡ 실내 대피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 신문지, 접착테이프로 밀폐하고,
-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며,
 - 외부와 연결된 기기주변을 랩, 접착테이프로 밀봉합니다.



➡ 오염물질은 신속히 제거합니다.



-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은 후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오염된 옷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등에 밀봉 처리해야 추가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무기 특성 및 공격시 행동요령

생물학 무기의 특성

- 생물학 무기는 공격 발생 사실을 감지하고 병원체를 규명,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비슷한 증세의 급성환자가 대규모로 발생, 지역·계절에 맞지 않는 질병 발생, 뚜렷한 원인 없이 동물·가축들이 집단폐사하면 생물학 공격으로 의심합니다.



생물학 무기 병원체



탄저균

- 감염 후 6일 뒤 잦은 기침 · 호흡곤란 ·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남
- 심해지면 2일 내에 사망



페스트

- 감염 후 1~6일 뒤 고열 · 호흡곤란 · 두통 ·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남
- 심해지면 2~4일 뒤 사망



천연두

- 감염 후 2~3일 뒤 온몸에 종기 · 고열 · 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남
- 심해지면 2주 내 감염환자 30%가 사망



바이러스성 출혈열

- 감염 후 고열 · 근육통 · 설사 · 가슴통증 · 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남
- 심해지면 일주일 뒤 감염환자 90%가 사망



보툴리즘

- 감염 후 1~3일 뒤 호흡곤란 ·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남
- 심해지면 1일 내에 사망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의심 물질 및 오염 환자와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의심스러운 물질, 오염 환자에게는 접근 ·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 마스크나 손수건 등으로 항상 코와 입을 보호한 후 대피하며,
- 대피 후 안전지역에서 예방접종 및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및 주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해서 섭취하고, 몸과 가정의 청결을 유지, 침구류는 자주 일광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에 의한 전염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항상 오염여부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방송, 보건관서, 민방위 대장의 안내에 따라 추가 감염을 예방합니다.

▶ 탄저균 오염 등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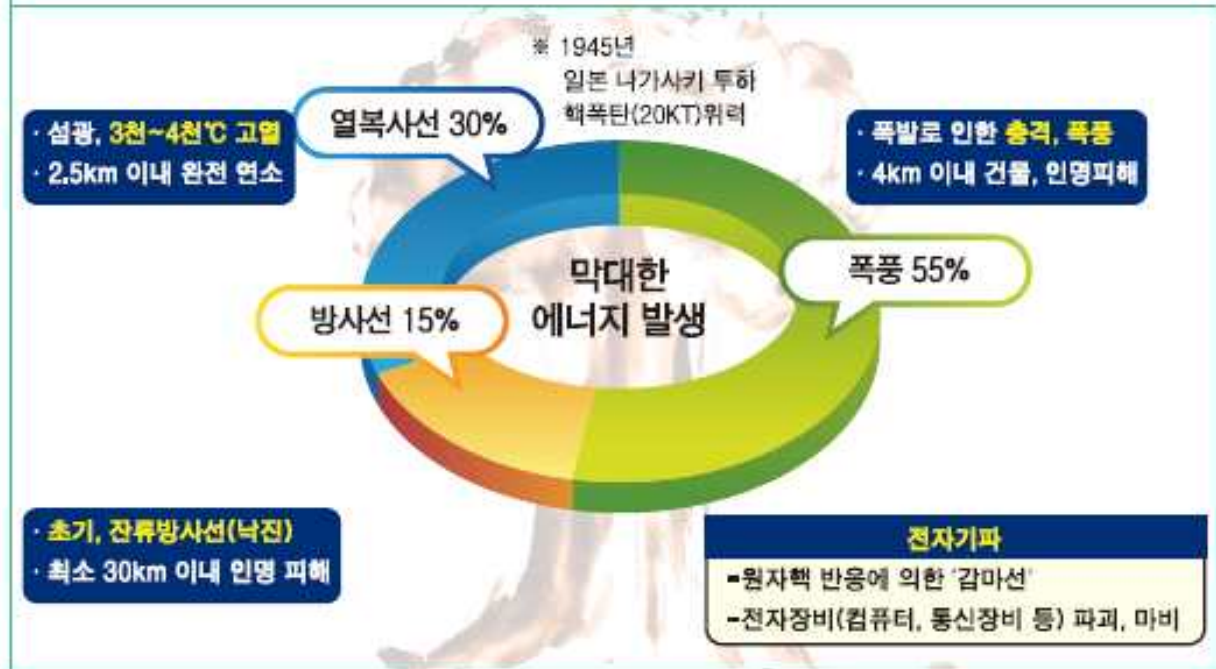
-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고 격리된 곳에 보관 후 보건소, 행정기관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 주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다른 방으로 격리 시켜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분말가루가 흘러나오면 옷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 분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합니다.





핵·방사능무기 특성 및 공격시 행동요령

핵무기 폭발시 위력



방사능 낙진의 피해범위

● 낙진에 의한 잔류 방사선

※ 낙진: 핵폭발에 의해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먼지, 눈, 비에 섞여 떨어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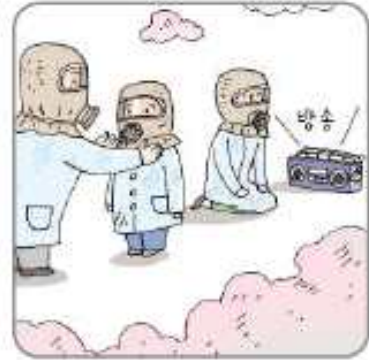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핵공격 전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합니다.



-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동굴 등 지하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배수로, 도랑, 개곡 등 주변 시설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대피시에는 방독면, 비닐 옷 등을 준비하고, 정부 안내방송을 계속 청취합니다.



핵공격 중에는 최대한 신속히 몸을 숨깁니다.



■ 폭발 섬광을 느끼면

- | | |
|-----------------------|------------------------|
| ① 즉시 도랑 등 은폐물을 이용 | ②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
| ③ 양손으로 눈·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 ④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

➡ 방사능에 대한 신체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오염 장소에서 멀수록, 인체 노출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고, 납·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 핵공격 이후에는 방사능 낙진을 최대한 피합니다.



- 정부 안내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낙진 지역에서 대피하고
- 여유가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대피하되
- 비닐 옷이나 우산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12. 1. 17.]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 17., 2015. 12. 1., 2015. 12. 22.>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5호, 2019. 7. 2, 일부개정]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5. 31., 2017. 7. 26.>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31., 2016. 5. 31.>

[제목개정 2012. 7. 31.]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18.>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 5. 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5.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	1,500만원

< 방송법 시행령 >

[시행 2019. 12. 10] [대통령령 제3023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7., 2006. 3. 10., 2007. 8. 7., 2007. 10. 15., 2008. 2. 29., 2010. 12. 27., 2011. 10. 14., 2012. 7. 31., 2014. 11. 24., 2016. 8. 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10. 14., 2014. 11. 2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4.>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시행 2018. 1. 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16호, 2018.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①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2. 해당 재난 등의 명칭
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5. 해당 재난 등의 정보발령기관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정보음을 송출할 것

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제5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구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6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19. 12. 3.>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5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7. 7. 26.>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 기상법 〉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86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기상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 4. 17.>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8. 4. 17.>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2015. 1. 20.>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삭제 <2018. 4. 17.>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세부 종류·내용, 대상 구역,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4. 17.>

제9조(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4. 1. 7., 2015. 1. 20.>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5. 1. 20.>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19. 9. 27] [대통령령 제30096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장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804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2. 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 11. 12] [행정안전부령 제81호, 2018. 11. 12, 일부개정]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취재단은 신문·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재구역·촬영구역·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